

당해연도 분기별 지방재정 분석방안 연구



당해연도 분기별 지방재정 분석방안 연구



연구진

이 장 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봉 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 2020년도(FY2019) 재정분석의 기본방향

- 재정분권, 신속재정집행,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표체계 구성
 - 지방재정 환경변화 대응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운용능력(계획, 집행) 향상을 위한 재정계획성 유도 지표체계 구성
 - 지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건전성 평가방식 개선 검토

- 재정환경 변화 관련 현안이슈 대응을 위한 지표체계 구성
 -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전반적인 동향 및 현안이슈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
 - 세출관리 내부경비관리 측면의 모니터링 역할 강화에 필요한 대표 지표 발굴
 - 재정분석 지표의 현안이슈 분석 및 재정컨설팅에의 활용을 통해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 지표체계의 반영도 제고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정성평가 관련 지표에 대한 보완을 통해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정부중점시책 반영, 투명성, 정확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운용을 유도

- 주요 세출지표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을 유도

□ **현행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보완·개선**

- 현행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문제점, 제약요인에 대한 보완·개선
 - 지표입력과정의 객관화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직접입력 지표 최소화
 -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생산이 중단된 참고지표 최소화
- 현안이슈와 관련한 객관적 분석과 재정분석 및 재정컨설팅에 활용도가 높은 지표체계를 구성
 - 기존 재정분석 지표 중 자치단체 재정운영 특성이 반영되는 지표와 현안 이슈를 반영하는 지표에 대한 재정컨설팅에의 활용도를 모색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도출을 위한 재정분석지표 체계로의 전환 모색
 - 지표값의 해석 상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지표의 유의성이 떨어지는 지표의 참고지표 이동 및 삭제 추진
 - 세분화된 지표의 통합을 통해 지방재정의 전반적 상황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재정책임성(정성평가지표) 폐지
 - 재정공시노력도 폐지 검토
 - 재정분석대응도 폐지 검토

2. 2020년 지방재정분석 지표의 주요 특징

□ **지표체계**

- 재정분권 확대, 신속집행,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지출의 확대 등 지방재정 관련 현안이슈의 재정분석에의 반영도 제고를 위해 재정컨설팅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자체노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구성

- 전년도에 이어서 FY2019년도 역시 국가경제 침체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재정분석을 통해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대응과 역할에 대한 재정운용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지표체계 구성
- 재정건전성: 수지관리, 채무 및 부채관리, 공기업관리
 -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 재정효율성: 세입효율성(수입관리, 징수관리), 세출효율성(외부지원관리, 내부경비관리)
 - **세입효율성**
 - (수입관리) 자체수입비율(증감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 (징수관리)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액, 세외수입체납액
 - **세출효율성**
 - (외부지원관리)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 (내부경비관리) 자체경비비율
- 재정계획성: 재정계획, 재정집행
 - (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 (재정집행) 이불용액비율

□ 재정건전성 분야 등급화 평가방식 도입

- 재정건전성 분야 평가방식 개선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들은 건전성 분야에서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관리채무비율 등에 대해 지표개선 노력을 투입한 결과가 동일한 노력을 투입한 효율성 분야 지표들에 비해 개선노력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 상황에 대해 평가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전성 분야 측면에서 소극적인 재정운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하도록 평가기준 및 평가 방식 개선 필요
- 별도로 최근 법령기준 변화에 따라 평가방식 개선이 요구되는 지표 발생 (공기업부채비율)

○ 재정건전성 분야 일부 지표에 대한 등급화 평가방식 도입

- 2019년도 기준 재정건전성 6개 지표 중 자치단체들의 지표값 분포의 밀집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표들에 대해 등급화 평가방식 도입 추진
-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및 공기업부채비율**에 대한 평가 등급기준 설정 및 등급화 평가 방식 도입
-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값 분포를 기반으로 해당 지표값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들 등급화 실시(자치구 관련 별도 등급기준 설정)
- 관리채무비율 역시 지표값 분포를 기반(BTL 포함)으로 해당 지표값 관리를 위해 건전성 개선 노력하는 자치단체들 대상으로 등급화 평가 기준 결정
- 공기업부채비율은 법령으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등급화 평가 실시
 -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부채관리 기준을 명시 -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공사채 발행한도를 연도별 부채목표비율과 연계하여 공사채 발행 및 사후 관리

□ 재정효율성 신규지표

○ (자체경비비율)세출관리 신규지표

- 세출관리 중 내부경비관리 지표로 기존에 사용 중인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 지표를 포함하여 내부경비관리 영역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지표 발굴 필요
- 여러 후보지표 중에서 내부경비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물건비(200) 내에

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방안 고려

- (지표 적용범위) 자체경비비율 지표의 산출범위를 일반회계로 결정
 - 향후 차년도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자체경비비율」 지표의 산정범위 조정과 결부되어 산출범위 역시 검토 필요성 제기

□ 재정계획성 분야 신설

○ 재정계획성 분야 신설

-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재정분권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운용에 대한 계획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역할
- 집행률, 이월금, 중기재정계획, 세수예측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분석체계 상에서 자치단체의 예산의 계획관리 및 집행관리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및 자체 계획능력 강화를 위한 유도

○ 재정계획성 측정을 위한 지표 발굴

- 재정계획성 분야는 ‘재정계획’ 관리영역과 ‘재정집행’ 관리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과 **재정집행**에 대해 세부 관리목적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및 정책 유도 지표 발굴
- 집행실적, 계획적 재정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지표 발굴

□ 당해연도 데이터를 이용한 분기별 분석 시범실시

○ 당해연도 재정운용노력·시책대응도 분석 실시

-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현황 및 시책대응에 관련된 신속집행 등 재정운용노력에 관한 분석을 실시

○ 당해연도 지방재정 모니터링체계 구축

- 분기별분석은 당해연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치단체들의 재정운용현황 및

시책대응노력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는 특성과 목적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상의 정책대응 상황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 기대

- 분기별 분석 지표체계는 **당해연도 생산 가능 지표 중심으로 구성**
 - 분기별 분석 지표는 당해연도 분기별 생산 가능 지표 중심으로 자치단체 재정운용노력 확인 및 모니터링 목적에 부합하는 후보 지표들을 구성
 - 분기별 분석 지표들을 포함하여 분기별 분석을 실시(2회; 3/4분기, 4/4분기)

□ 참고지표

- 2019년도 재정분석 참고지표(17개) 존치 및 2020년도 신규 참고지표 6개 추가(순세제잉여금비율, 연말지출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 경상수지비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2020년도 참고지표 합계 23개
 - 전년도 참고지표(2019년도 17개)는 모두 기존 데이터 중요성 및 존치 필요성에 따라 지정
 - ※ 2019년도 참고지표 18개 중 ‘불용·이월액비율’은 2020년도 본 지표 사용으로 참고지표에서 제외(총 17개)

【요약 표】 2019년도와 2020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비교

2019년 지표체계			2020년 지표체계					
분야 (1,000점)	지표	비고	분야 (1,000점)	지표	비고			
Ⅰ. 재정 건전성 (500점)	1. 통합재정수지비율		Ⅰ. 재정 건전성 (300점)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참고지표 이동			
	3. 관리채무비율			2. 관리채무비율				
	4. 통합유동부채비율			3. 통합유동부채비율				
	5. 공기업무채비율(공단 포함)			4. 공기업무채비율(공단 포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참고지표 이동			
Ⅱ. 재정 효율성 (500점)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Ⅱ. 재정 효율성 (500점)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1. 출연출자전출금비율(증감률)			9. 출연출자전출금비율(증감률)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참고지표 이동			
Ⅲ. 재정 책임성 (감점 상한 없음)	14. 재정 법령준수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5점	Ⅲ. 재정 계획성 (200점)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신규지표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5점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재방재정법위반	건수 당 -2점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보조금관리법률위반	건수 당 -2점					
		지방회계법 위반	건수 당 -2점				재정 책임성	재정법령준수
		지방계약법 위반	건수 당 -2점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제2장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현황	7
제1절 재정분석 개요	9
1. 현행 제도 목적과 역할	9
2. 현행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9
3. 재정분석 제도운영 및 분석 절차	9
제2절 재정분석의 지표체계	11
1. 현행(FY2018) 재정분석 지표 분류기준	11
2. 현행(FY2018) 재정분석 지표체계	11
제3장 지방재정분석 지표 보완·개선	15
제1절 2020년도 지표 개선의 기본방향	17
1. 2020년도(FY2019) 재정분석의 기본방향	17
2. 지표체계 검토의 기준	18
제2절 재정건전성	19
1. 기본방향	19
2. 재정건전성 평가방식 개선	20
제3절 재정효율성 지표의 검토	29
1. 기본방향	29

2. 재정효율성 세출관리 지표 개선	31
제4절 재정계획성 분야 신설	37
1. 기본방향	37
2. 재정계획성 분야 신설 검토	37
제5절 당해연도 분기별 분석	46
1. 기본방향	46
2. 당해연도 분기별 분석 신설 검토	46
제4장 2020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	53
제1절 2020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	55
1. 2020년도 지표체계 기본방향	55
2. 2020년 지방재정분석 지표의 주요 특징	57
제2절 배점 및 가중치 조정	62
1. 분야별 배점·가중치 조정	62
2. 지표별 가중치 검토	64
【부 록】	
1. 재정건전성 등급화방식 지표값 분포 자료 지표추출 매뉴얼	66
2. 2020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 작성 매뉴얼	85

CONTENT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표목차	[표 2-1] 지방재정분석 지표구성 및 배점(FY2018년)	12
	[표 2-2] FY2018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12
	[표 3-1] 재정 건전성 지표 검토사항	20
	[표 3-2] 재정 건전성 지표 연혁	20
	[표 3-3] 재정 효율성(세출부문) 지표 검토사항	29
	[표 3-4] 재정효율성(세출관리) 지표 연혁	31
	[표 4-1] 2020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56
	[표 4-2] 2019년도와 2020년도 지표체계 비교	61
	[표 4-3] 2020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 가중치 조정	6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6
	[그림 2-1]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운영	10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절차	10
	[그림 3-1] 통합재정수지비율 구간별 평가방식	25
	[그림 3-2] 불용액비율-이월액비율 상관관계	4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장

서론

KRILA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¹⁾

□ 2020년도 재정분석 제도개선

- 재정분권의 확대, 재정의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지출의 확대 등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재정 운영 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체계 개선
-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전반적인 동향 및 현안 이슈 검토
 - 재정지출의 확대에 따른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
 - 세입 및 세출운영의 효율성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지표 체계 구축
 -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의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표 개발
 - 자치단체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 도출
 - 재정상태 및 구조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한 지표 체계 마련
 - 재정운영상황의 객관적 분석자료 도출을 통한 재정컨설팅 지원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분석결과의 예산반영의 환류기능 강화 등 정책 변화 반영

□ 현행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보완·개선

- 현행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문제점, 제약요인에 대한 보완·개선
 - 지표입력과정의 객관화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직접입력 지표 최소화
 -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생산이 중단된 참고지표 최소화

1) 본 연구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의 분석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람” 작성을 위한 연차별 연구입니다. 따라서 일부내용이 전년도 연구와 유사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 현안이슈와 관련한 객관적 분석과 재정분석 및 재정컨설팅에 활용도가 높은 지표체계를 구성
 - 기존 재정분석 지표 중 자치단체 재정운영 특성이 반영되는 지표와 현안 이슈를 반영하는 지표에 대한 재정컨설팅에의 활용도를 모색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도출을 위한 재정분석지표 체계로의 전환 모색
 - 지표값의 해석 상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지표의 유의성이 떨어지는 지표의 참고지표 이동 및 삭제 추진
 - 세분화된 지표의 통합을 통해 지방재정의 전반적 상황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재정책임성(정성평가지표) 폐지
 - 재정공시노력도 폐지 검토
 - 재정분석대응도 폐지 검토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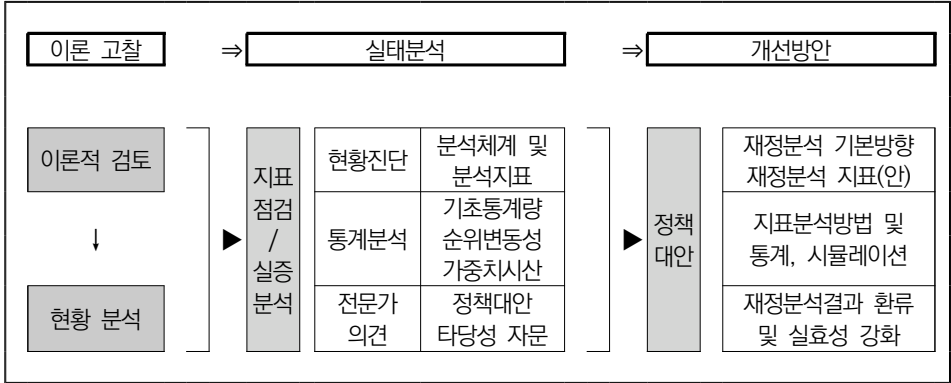
- 지방재정 환경변화 및 현안재정 이슈와 관련하여 재정분석 실효성 강화 방안 모색
- 2020년도 재정분석에 활용할 분석 지표체계 마련
 - 건전성 지표 평가방식 개선
 - 효율성 분야 지표 보완·개선
 - 자치단체 실정 등 지표 적실성 강화
 - 자치단체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상황의 객관적 측정 능력 강화
 - 재정계획성 분야 지표 체계 발굴
 - 당해연도 분기별 분석을 위한 새로운 지표의 발굴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람 연구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재정 건전성, 효율성 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
 - * 법령, 제도 연구, 선행연구 검토
 - 재정분석기법, 지표평가방법 등 검토
 - 추세모니터링, 종합지수화 등 검토
- 분석지표 보완·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지표개선 TF 운영)
 - 분야별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지표개선 안 마련
 - * 재정전문가, 계량통계전문가, 공무원 참여
- 통계분석, 현장조사 등 실증적 분석
 - 지방재정분석 관련 실무자 면담 및 현지조사에 의한 정책방안 타당성 검토

- 분석지표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등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2장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현황

제1절 재정분석 개요

제2절 재정분석의 지표체계

제2장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현황

KRILA

제1절

재정분석 개요

1. 현행 제도 목적과 역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의 종합적 점검시스템
-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및 예산절감의 노력을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재정운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포상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기능으로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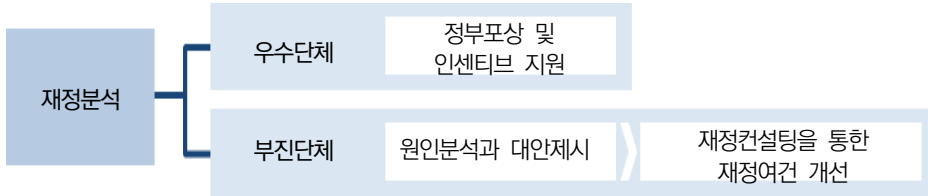
2. 현행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2, 제65조

3. 재정분석 제도운영 및 분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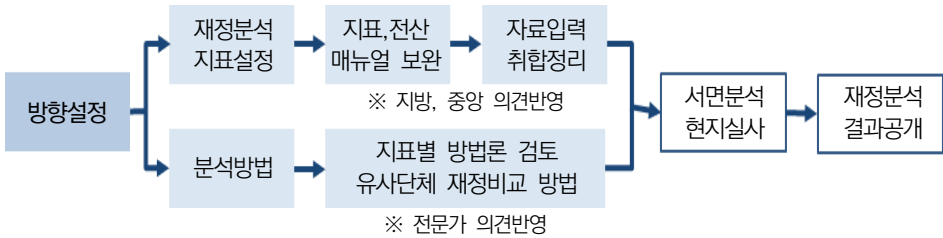
-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정례적인 분석·공개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책임성 확보와 재정위기 사전예방
-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수단체에 대한 정부포상
- 재정분석 결과가 부진한 단체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재정컨설팅을 통한 재정여건 개선을 유도

[그림 2-1]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운영



○ 분석 절차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절차



제2절 재정분석의 지표체계

1. 현행(FY2018) 재정분석 지표 분류기준

- (지표구성) 지표는 분석 목적과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재정효율성·재정책임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 및 평가
 - 각 분야별로 분석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요인을 체계화
- (재정건전성) 현재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입각한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를 재정수지, 채무(부채)관리, 공기업 관점에서 구분
 - 재정수지 관점: 통합재정수지, 경상수지
 - 채무(부채)관리 관점: 관리채무규모, 채무상환능력
 - 공기업 관점: 공기업부채, 공기업경영실적
- (재정효율성) 자원조달 및 재정지출 효과 관점에서 세입관리 효율, 세출관리 효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
 - 세입관리: 세입조달능력, 체납액 관리 등
 - 세출관리: 지방보조금, 출자출연전출금,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 절감률 등
- (재정책임성)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준법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지표로 구성
 - 재정법령준수

2. 현행(FY2018) 재정분석 지표체계

- 재정분석 지표 개선 TF 및 지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본 지표 선정
 - 지표의 중요도와 변별력, 정보 특성 등을 고려
 - 재정건전성 6개, 재정효율성 7개, 재정책임성 1개 지표
 - ※ 이와 별도로 재정통계 관리 목적의 참고지표 18개 운영

[표 2-1] 지방재정분석 지표구성 및 배점(FY2018년)

분 야	세부지표(22개)	배점 (1,000점)
재정건전성 (6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수지관리 2개 지표 ▪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등 채무(부채)관리 2개 지표 ▪ 공기업부채비율 등 공기업관리 2개 지표 	500점
재정효율성 (7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수입비율(증감률) 등 수입관리 1개 지표 ▪ 지방세징수율(제고율) 등 징수관리 2개 지표 ▪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등 외부자원관리 2개 지표 - 외부자원관리 분야 2개 지표에 대해 정성평가 지표 운영(FY2019) ▪ 지방의회경비절감률 등 내부경비관리 2개 지표 	500점 ※ 보통교부세 공유
재정책임성 (1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법령준수 1개 지표 	감점 지표

※ (재정책임성분야 지표) 총점에서 감점

[표 2-2] FY2018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1차 분류	2차 분류	재정분석지표		2019년 개선사항
재정 건전성 6개	수지관리	통합재정수지비율		변경된 산출기준 적용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경상지출 제외 적용)
		경상수지비율		
	채무 및 부채관리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 관리	공기업부채비율		지표입력방식 개선(중앙입력)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지표입력방식 개선(중앙입력)
재정 효율성 7개	수입 관리	자체수입비율 (증감률)	지방세수입	지표통합 (지방세수입비율 경상세외수입비율)
			세외수입	
	세입 관리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자동차세 주행분 포함 산정 회계연도 말 미수납액 기준 (불납결손액 제외)
		징수 관리	지방세체납액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			

1차 분류	2차 분류		재정분석지표	2019년 개선사항
	세출 관리	외부 지원 관리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FY 2019 예고 일자리사업 평가 제외
			2020년(FY2019) 정성평가 반영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FY 2019 예고 일자리창출 반영
		2020년(FY2019) 정성평가 반영		
		내부 경비 관리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산정방식(기준액 산출 방식 변경)
업무추진비절감률	산정방식(기준액 산출 방식 변경)			
재정 책임성 1개	재정법령준수	재정법령위반 (6개)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미확보 시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미확보 시 -5점	
		지방재정법 위반	위반건수 기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건수 기준	
		지방계약법 위반	위반건수 기준	
		지방회계법 위반	위반건수 기준	
14개				

제3장

지방재정분석 지표 보완·개선

제1절 2020년도 지표 개선의 기본방향

제2절 재정건전성

제3절 재정효율성 지표의 검토

제4절 재정계획성 분야 신설

제5절 당해연도 분기별 분석

제3장

지방재정분석 지표 보완·개선

KRILA

제1절

2020년도 지표 개선의 기본방향

1. 2020년도(FY2019) 재정분석의 기본방향

가. 재정분권, 신속재정집행,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표체계 구성

- 지방재정 환경변화 대응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운용능력(계획, 집행) 향상을 위한 재정계획성 유도 지표체계 구성
- 지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건전성 평가방식 개선 검토

나. 재정환경 변화 관련 현안이슈 대응을 위한 지표체계 구성

-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전반적인 동향 및 현안이슈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
 - 세출관리 내부경비관리 측면의 모니터링 역할 강화에 필요한 대표 지표 발굴
 - 재정분석 지표의 현안이슈 분석 및 재정컨설팅에의 활용을 통해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 지표체계의 반영도 제고

다.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정성평가 관련 지표에 대한 보완을 통해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정부중점시책 반영, 투명성, 정확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운영을 유도

- 주요 세출지표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을 유도

2. 지표체계 검토의 기준

- 재정분석 지표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 개선 기준 관련 원칙을 고려함

가. 적합성

- 지표는 각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재정분석의 목표와 뚜렷한 연관성을 지녀야 함
- 분야별로 지표의 항목 및 산정방식을 검토하여 지표도입 취지와 적합성 여부를 검토

나. 유의성

- 지표는 지방재정환경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재정환경 변화 동향 및 현안이슈를 반영하여야 함

다. 명확성

- 지표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지표가 의미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자료가 일관되게 수집되도록 함

라. 신뢰성

- 지표가 시간적 변화(기저효과), 지역적 차이와 무관하게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상황이 변하더라도 유용성을 잃지 않도록 함

제2절 재정건전성

1. 기본방향

1) 자치단체 건전성 분야 평가개선 방향

- 현행 지방재정분석은 투입→과정(집행)→산출(결과) 중 투입과 과정(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산출 성과(결과)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음
 - 돈의 가치(value for money)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고 얼마나 돈을 잘 관리해서 쓰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재정지출을 통하여 ‘어떤 성과를 발생시켰느냐’에 중요성이 낮음
 - 재정분석에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판단되었다고 하여 좋은 성과를 창출한 지방자치단체라고 칭하기 어려움
- 현재 채무발행을 안하고 사업을 안하면서 돈을 잘 걷는 소극행정을 한다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따라서 소극적 재정운용이 재정분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재정분석의 현재 기준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현행 건전성 지표 평가방식은 개선 필요

2) 건전성 지표 평가방식 개선방향

□ 재정수지, 채무 관련 지표의 평가방식 개선 검토

-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라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급화 평가방식 도입 검토
-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전성 분야 측면에서 소극적인 재정운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하도록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 개선 필요

□ 공기업부채 지표에 대한 지표 평가방식 개선 검토

- 현행 공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부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부합하도록 공기업부채 평가방식 개선 필요

[표 3-1] 재정 건전성 지표 검토사항

측정관점	분석지표	특성	2020년 검토사항
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비율	국제기준	평가방식 개선
	2. 경상수지비율	복식부기	참고지표화
공기업관점	5. 공기업부채비율	공기업	평가방식 개선
	6.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공기업	참고지표화
채무(부채관리)	3. 관리채무비율		평가방식 개선
	4. 통합유동부채비율	통합부채	평가방식 개선

2. 재정건전성 평가방식 개선

1) 재정건전성 측정 지표의 연혁

[표 3-2] 재정 건전성 지표 연혁

측정관점	세부지표	비고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비율	- 2009년도 도입지표 · 국제기구의 지방재정관련 통계요구로 인해 국제기준의 통합 재정수지 지표 도입
	실질수지비율	- 2013년도 도입지표 · 이월금 및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자치단체 실제 수입 대비 수지비율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7년 재정분석에서 참고지표로 이동 · 통합재정수지비율의 보조지표적 성격이 강하며 단체별보고서 작성 시 산출된 실질수지의 활용성이 떨어짐
	경상수지비율	- 2005년 이전 도입지표 · 재정수지를 대표하는 지표

측정관점	세부지표	비고
채무(부채)관리	관리채무비율	- 2013년도 도입지표 · 채무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채무의 수준과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측정, 예측하기 위해 도입(BTL 잔액을 채무범위에 포함)
	관리채무부담비율	- 2013년도 도입지표, 2016년도 참고지표로 이동 · 관리채무비율과의 높은 상관성 및 이중 평가 문제로 참고지표 이동
	관리채무상환비율	- 2013년도 도입지표, 2016년도 참고지표로 이동 · 관리채무비율과의 높은 상관성 및 이중 평가 문제로 참고지표 이동
	지방채무잔액지수	- 2010년도 도입지표 · 지방재정위기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반영을 위해 도입 ·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 · 2013년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이 도입되면서 지표 간 높은 상관성으로 지표정리 차원에서 참고지표로 이동
	장래세대부담비율	- 2010년도 도입지표 · 지방재정위기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반영을 위해 도입 ·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 · 2013년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이 도입되면서 지표 간 높은 상관성으로 지표정리 차원에서 참고지표로 이동
	실질채무비율	- 2015년도 도입지표 · 광역자치단체 관리채무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중 기초자치단체 용자금을 제외하고 본청에서 사용하는 용자금만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7년 재정분석에서 관리채무비율로 통합 · 관리채무를 채무 대표지표로 관리하고 있어 채무에 대한 분석·평가를 관리채무비율로 일원화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 2013년도 도입지표 (현금창출자산대비부채비율) · 채무 이외 부채개념 (복식부기 부채) 도입에 따라 도입된 지표 · 2016년도 지표명 변경(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 2016년도 도입지표 · 재정관리 범위를 통합회계 및 우발부채로 확대됨에 따라 통합부채 관리 차원에서 도입

측정관점	세부지표	비고
공기업 관점	공기업부채비율	- 2013년도 도입지표 · 지방자치단체 채무 및 부채 관리범위의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 채무 및 부채 수준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6년도 적용범위 확대(지방공단 포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2013년도 도입지표 · 지방자치단체 관리 범위의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 재정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도입 · 2016년도 적용범위 확대(지방공단 포함)

*회색음영: 2019년 재정분석 지표(붉은색 음영은 과거 지표)

2)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방식의 개선

통합재정수지비율

-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적인 재정수지 측정을 위한 국제기준지표로써 경상수지비율과 함께 자치단체들의 재정건전성 측정에 활용
- 일부 광역시·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통합재정수지비율을 수지균형 수준보다 높은 수치 상태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치단체들이 통합재정수지의 운용 측면에서 수지균형에 기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하도록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 개선 필요
-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분석결과에서 통합재정수지비율을 포함한 건전성 지표 개선노력 결과가 동일한 노력을 투입한 효율성 측면에 비해 개선노력 결과가 미약하게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제도개선 요청

관리채무비율 지표

- 관리채무비율의 경우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높은 관리채무비율의 원인이 국비가 일부 투입되는 BTL 사업이라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
- BTL 지급잔액의 경우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

로 지급할 금액이며 이는 장기간의 계약기간 동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급노력이 제한적인 상황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BTL 상환여건을 포함한 의미의 채무비율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존재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

- 관리범위: 통합회계(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기금)
- 채무범위: 일반채무 + BTL 임차료 + 우발채무(50%)
- 관리채무 = 일반채무(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 + BTL 임차료
- BTL 임차료: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의거하면 BTL 임차료는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관리채무비율 등급화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고려

□ 공기업부채비율

- 법령기준으로써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새롭게 제시되어 공기업부채비율 평가방식에 반영 필요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부채관리 기준을 명시
 -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공사채 발행한도를 연도별 부채목표비율과 연계하여 공사채 발행 및 사후 관리 요구

공기업 부채비율

- 개념: 지방공기업에 대해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공기업의 부채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 산정방식: $\text{공기업부채비율}(\%) = (\text{부채총액} / \text{자기자본총액}) * 100$
- ※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 자기자본, 부채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

□ 재정건전성 평가방식 개선 주요내용

- (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및 공기업부채비율에 대한 평가 등급기준 설정
 -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값 분포를 기반으로하여 해당 지표값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들 등급화 실시(자치구 관련 별도 등급기준 설정)
 - 관리채무비율에 대해 평가 등급기준 확정
 - 공기업부채비율은 법령으로 기준이 제시(아래 참조)
-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 평가방식에서 0%을 기준값으로 할 때 전체 자치단체들(자치구 제외)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구간값을 결정
 - : 통합재정수지비율 0을 기준값으로 하여 자치단체 지표값이 기준값 이상일 때 최상위등급으로 설정 (ex) 현행 전체 자치단체 수(자치구 제외)의 70% 이상 해당 지표값 분포에 따라 최상위 등급 내에 분포(FY2018 기준)

등급 구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구간(X)	$0\% \leq X$	$-1\% \leq X < 0\%$	$-2\% \leq X < -1\%$	$-4\% \leq X < -2\%$	$X < -4\%$
구간별 점수	95	85	75	65	55

- 자치구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개별적 기준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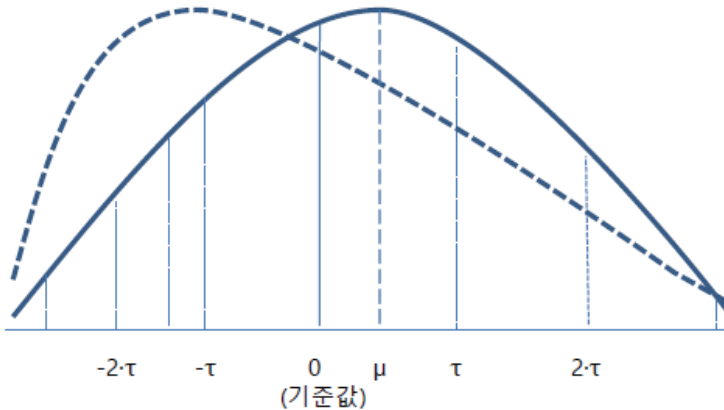
등급 구간(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구간(X)	$4\% \leq X$	$0\% \leq X < 4\%$	$-3\% \leq X < 0\%$	$-5\% \leq X < -3\%$	$X < -5\%$
구간별 점수	95	85	75	65	55

- 통합재정수지비율 등급화 방식
 -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해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값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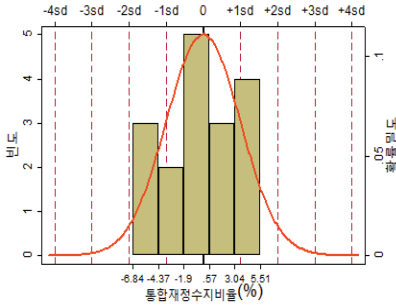
- 표현하면 수입-지출비율이 100%에 부합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0을 기준으로 하여 하향 및 상향 일정범위에 대한 등급화 방식 제안
- 통합재정수지비율의 경우 지표값의 분포에서 평가의 중심이 되는 가치가 0이므로 지표값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해당 기준값(0)을 중심으로 표준편차(S.D.: τ)를 구하여 일정 구간별 분포하는 자치단체 지표값에 대해 차등 평가 실시
 - 0을 기준으로 할 때 이를 중심으로 전체 지표값 분포에 대한 표준편차를 구하고 해당 표준편차의 확장(1표준편차 구간(\pm S.D.), 2표준편차 구간(\pm 2·S.D.), 3 표준편차 구간(\pm 3·S.D.))을 등급 구간 설정에 참조

[그림 3-1] 통합재정수지비율 구간별 평가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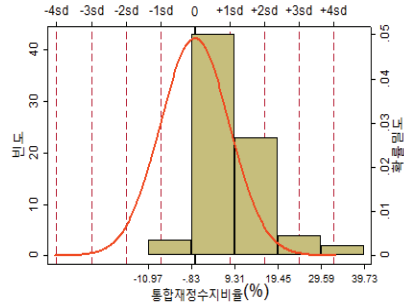
(평균: μ ; 기준값: 0; 기준값을 중심으로 한 표준편차: 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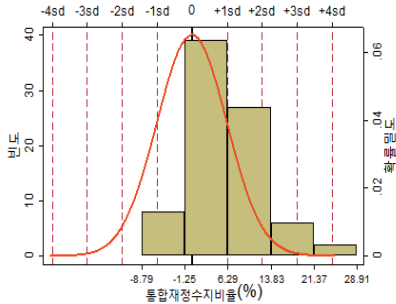
- 기준값(0%)을 중심으로 매년 자치단체들의 지표값 분포에 대한 구간 결정 및 등급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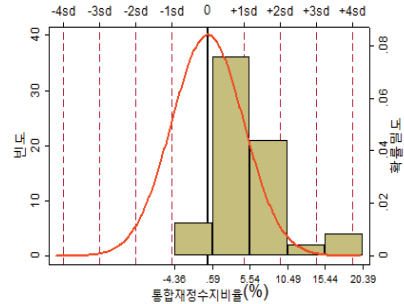
(가) 특·광역시·도



(나) 시



(다) 군



(라) 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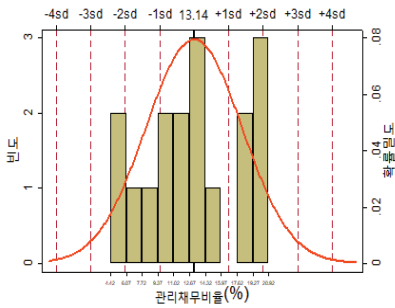
○ 관리채무비율은 전체 자치단체 지표값 분포 현황에 따라 등급화평가방식 기준 확정

- 채무 제로가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이상적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채무비율의 적정구간별 평가를 통해 자치단체 채무운용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식 도입 필요
- 특정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에서 BTL은 채무감소 노력을 통해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BTL 보유 전체 지방자치단체 대상 세입결산대비 BTL 비율들의 평균(약 2.0%)을 1등급 기준에 적용
- 사전위기관리제도 위기관리지표 기준에 따라 관리채무비율 25%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관심단체로써 진단단체 선정 후보로 지정됨에 따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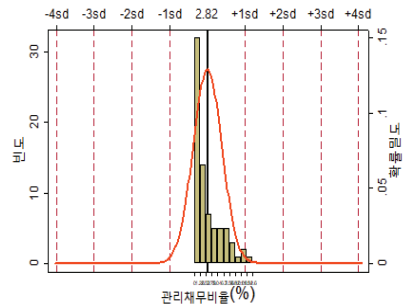
채무비율 25%를 최하등급 5등급 기준으로 적용

- 자치단체들의 관리채무규모 2등급-4등급 기준은 자치단체 지표값 분포 빈도에 따라 설정(FY201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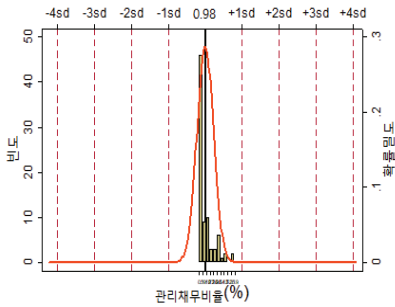
등급 구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구간(X)	$X < 2\%$	$2\% \leq X < 7\%$	$7\% \leq X < 16\%$	$16\% \leq X < 25\%$	$25\% \leq X$
구간별 점수	95	85	75	65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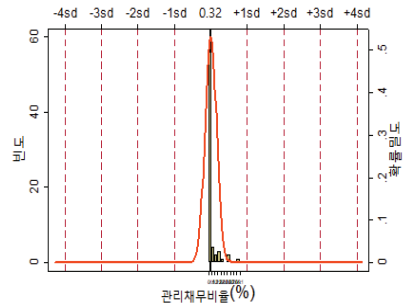
(가) 특·광역시·도



(나) 시



(다) 군



(라) 자치구

○ 공기업부채비율은 법령에 따라 아래의 기준 제시

- 공기업부채비율은 법령기준으로써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새롭게 제시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부채관리 기준을 명시
-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공사채 발행한도를 연도별 부채목표 비율과 연계하여 공사채 발행 및 사후 관리
- 현재와 같이 증감율 형식의 평가방식 보다 목표를 기준으로 상·하한을 구분하여 구간별 평가 방법 시행 적절
예시) 100% - 150% - 200% - 250%

등급 구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구간(X)	100% 미만	$100\% \leq X < 150\%$	$150\% \leq X < 200\%$	$200\% \leq X < 250\%$	250% 이상
구간별 점수	95	85	75	65	55

제3절 재정효율성 지표의 검토

1. 기본방향

-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 이외에 내부경비관리 영역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안 지표 발굴 추진
 - 현재 외부경비관리와 내부경비관리로 구성되어 있는 세출관리 영역 중 내부경비관리에 포함되어있는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들 지표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
- (1) 현행 세출관리의 [외부지원관리 및 내부경비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지표 보완을 통해 지표체계 개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2) 현행 세출관리 [외부지원관리 및 내부경비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 현행 세출관리 체계유지 한다면 [내부경비관리] 분야 명에 대한 변경 검토와 해당 세부지표 보완 필요성 검토

【표 3-3】 재정 효율성(세출부문) 지표 검토사항

측정관점	분석지표	특성	2019년 검토사항
세출관리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보통교부세	유의성 (일자리창출, 사회적 경제 기초 반영)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보통교부세	적합성, 신뢰성(지표산정방식 변경)
	17. 업무추진비절감률	보통교부세	적합성, 신뢰성(지표산정방식 변경)
	18.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보통교부세	유의성(참고지표 이동)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유의성(참고지표 이동)

□ **세출관리 지표체계 개선방안**

- (1안) 세출관리 중 외부지원관리-내부경비관리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안
(예: 내부경비관리 ⇨ [자체경비관리])

재정 효율성	세입관리		
	세출관리	외부지원관리	
		예) 자체경비관리	

- (2안) 세출관리 중 내부경비관리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표 보강
(예: 행정운영경비비율 추가)

재정 효율성	세입관리		
	세출관리	외부지원관리	
		자체경비관리	예) 행정운영경비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

- (3안) 내부경비 지표체계 전체 변경

재정 효율성	세입관리		
	세출관리	외부지원관리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내부경비관리	예) 행정운영경비비율 예) 자체경비절감노력도

2. 재정부효율성 세출관리 지표 개선

1) 재정부효율성(세출관리) 측정 지표 연혁

[표 3-4] 재정부효율성(세출관리) 지표 연혁

측정관점	세부지표	비고	
효율성 (세입관리)	자체세입비율 (비율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건전성 지표(자체세입기반)로 도입 · 2013년 효율성 지표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분석 결과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항목과 연계 강화를 위해 효율성으로 이동 - 2017년 지방세수입비율과 경상세외수입비율로 이원화
효율성 (세출관리)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 2007년 도입지표 · 민간이전경비비율로 도입 · 2016년 지방보조금비율로 지표명 변경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도입지표 (출자출연금비율) · 지출관리강화 차원에서 도입(제3섹터로의 출연출자금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직접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6년 출자출연전출금 비율로 지표명 변경 	
	의무지출비율(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도입지표 · 지출관리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지표로 고정 지출로 인한 자치단체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5년 참고지표로 이동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도입지표 · 지방보조금 절감을 위해 민간위탁금 편성 사례 방지 및 민간으로 이전되는 세출의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5년 참고지표로 도입 후 2016년 본 지표화 	
노력도 (세입확충노력) 2014년 세입효율성으로 통합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노력과 관련된 사항은 재정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기타 사항은 별도 취합하여 활용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로 도입 	
	경상세외수입비율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로 도입 	
	세외수입체납액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측정관점	세부지표	비고
	비율(증감률)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 도로 도입
	탄력세율적용노력도	-2010년 도입지표
노력도 (세출절감노력) 2014년 세출효율성으로 통합	인건비집행률	- 2010년 도입지표 · 재정분석결과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항목과의 연계를 위해 도입 - 2017년 인건비집행률로 지표명 변경 및 참고지표 이동
	지방의회경비절감률	- 2010년 도입지표 · 재정분석결과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항목과의 연계를 위해 도입
	업무추진비절감률	- 2010년 도입지표 · 재정분석결과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항목과의 연계를 위해 도입
	행사축제경비비율 (비율증감률)	- 2005~2007년 도입지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노력도와 재정투명성 측정을 위해 도입된 지표 ·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로 도입되어 2016년 행사축제경비 비율(비율증감률)로 지표 변경
	자본시설지출비율 (증감률)	- 2013년 도입지표 · 지출관리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지표로 자본시설에 대한 고 정지출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5년 참고지표로 이동
	민간이전경비절감 노력도	- 2010년 도입지표 · 재정분석결과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항목과의 연계를 위해 도입 · 세출절감노력도 지표가 세출효율성으로 통합되면서 2015 년 참고지표로 이동 · 2016년 지방보조금절감노력도로 지표명 변경
자본시설관리 (2014년 세출관리로 통합)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증감률)	- 2013년 도입지표 · 지출관리강화 차원에서 도입(제3섹터로의 출연출자금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 위에 대해 직접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7년 참고지표로 이동

○ 세출관리 중 내부경비관리 관련 자치단체의 인건비 포함 경상경비에 대한 포괄적 절감 노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검토

- (경상경비비율) 인건비를 포함하여 경상적 경비의 비율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세출관리에서 내부경비관리의 전반적인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역할; 경상경비절감률(증감률)
- (정책사업투자비비율) 정책사업비에서 투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중장기 내구재 특성을 지니는 인프라 구축 내지 자본투자사업에 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하도록 유도하여 재정지출의 투자적 성향을 높이도록 유도
- (투자사업비율) 경상적 경비 지출의 상반된 개념으로 재정지출에서 투자적 성향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세출관리상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
- (행정운영경비비율) 행정운영에 있어서 인력 및 부서운영을 위한 비용이 낮을수록 경비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경비 관련 전반적인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
- (자체경비절감노력도) 기존의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은 자치단체 내에서 실제 경비비중이 낮음에 따라 [지방의회경비절감률(50%) + 업무추진비절감률(50%)] 통합비율 적용해서 내부경비절감 노력에 대한 지표 통합

경상경비비율/증감률	설명
개요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중 경상경비와 관련된 운용노력 실적 모니터링
정책목적	재정운영의 세출관리 중 내부경비관리 관련 절감 운용노력을 유도
해석 및 특징	- 재정지출구조에서 재정경직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경상경비 모니터링이 필요
산정방식	경상경비비율: $\{(\text{경상경비}) / \text{세출결산액}\} * 100 (\%)$ 경상경비절감률(증감률) : $\{(\text{현년도 경상경비} - \text{전년도 경상경비}) / \text{전년도 경상경비}\} * 100 (\%)$ - 경상경비: 인건비 + 경상적 경비 - 경상적 경비: 결산부속서류의 세세항별 결산액의 경상적 경비
대상회계	일반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하향식; 경상비절감률(증감률)은 현년도 경상경비 절감이 있을 때 음(-)수로 표시

정책사업투자비비율	설명
개요	정책사업비에서 시설비·자산취득비 등 투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정책목적	- 중장기 내구재 특성을 지니는 인프라 구축 내지 자본투자사업에 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하도록 유도(투자적 성향 유도)
해석 및 특징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투자사업비의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자원배분 중 투자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므로 세출관리가 효율적인 적으로 판단
산정방식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 100 (%) - 투자지출액: 자본지출(400) + 용자 및 출자(500) - 공사공단지본전출금(404)제외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상향식

투자사업비비율	설명
개요	전체 결산액 중 투자사업비의 비중 및 증감을 측정
정책목적	중장기 내구재 특성을 지니는 인프라 구축 내지 자본투자사업에 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하도록 유도하여 재정지출의 투자적 성향을 높이도록 유도
해석 및 특징	- 투자사업비의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자원배분 중 투자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므로 세출관리가 효율적인 적으로 판단
산정방식	투자사업비율: {사업비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사업비결산액{(보조사업총액-보조사업 인건비) + 자체사업}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세출결산에서 도는 재정보전금, 특별·광역시는 조정교부금액을 제외하여 산정 - 투자비는 사업예산에 근거하여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상향식

행정운영경비비율	설명
개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부서관리비용의 적정비율 및 연도간 증감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정책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경비 관련 전반적인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
해석 및 특징	- 행정운영에 있어서 인력 및 부서운영을 위한 비용이 낮을수록 경비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행정운영경비비율	설명
산정방식	행정운영경비비율(%) : {행정운영경비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합계 - 행정운영경비증감률(%): {(2019년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 - 2018년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2018년도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 100(%)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하향식

2) 세출지표 개선 관련 논의사항

- 평가에 있어서 지표 간 배타성이 있을 필요가 있는데 세출관리의 경우 행정운영경비가 높으면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도 높을 수 밖에 없음
- 중앙정부의 방향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인데 지방의 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의 경우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책임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투자나 정책사업비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투자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높으면 많아짐
- 인건비의 경우 재정위기와 직결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평가지표로는 부적절함
- 재정위기가 있을 경우 경상경비에서 많이 차감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닌 경상경비 중 몇 개 항목만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3) 세출지표 개선 내용

세출관리 신규지표 채택

- 세출관리 중 내부경비관리 지표로 기존에 사용 중인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 지표 이외에 내부경비관리 영역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지표 발굴 추진
- 내부경비관리 영역에서 대표성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검

또한 결과 물건비(200) 항목 중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를 포함하고 기존의 지방의회경비절감률 및 업무추진비절감률 내부경비관리 지표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체경비비율(증감률)'이라는 명칭으로 신규지표 개발

자체경비관리비율(증감률)	설명
개요	연간 세출결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재료비에 관련된 지출 절감노력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 자체경비관리비율(증감률) 측정
정책목적	자치단체의 물건비(200)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정집행 관행을 방지 및 유도
해석 및 특징	내부경비 세출관리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측정하는 지표로 자치단체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도록 의미; 일반운영비(01-04 포함, 05공립대학운영비 제외),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함
산정방식	자체경비: 일반운영비 + 여비 + 재료비 + 의회경비 + 업무추진비 자체경비관리비율: (일반운영비, 경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자체경비관리비율 증감률: [(자체경비관리비율 - 전년도 자체경비관리비율) / 전년도 자체경비관리비율] × 100 대상과목: 201(공립대학운영비 제외), 202, 203(01 및 03), 205(04, 05, 06 포함), 206
대상회계	일반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지표값이 낮아지면 바람직(하향지표)

- (지표 적용범위) 자체경비비율 지표의 산출범위를 일반회계로 결정(기존의 내부경비관리 지표들;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을 포함하여 지표 산정범위를 확대)

제4절 재정계획성 분야 신설

1. 기본방향

- 자치단체 재정분석의 범위를 전년도 결산(재정운영 결과) 중심의 분석에서 적정한 재정계획의 수립(예산·계획), 계획적 예산집행 (예산집행) 등으로의 확대를 모색
- 집행률, 이월금, 중기재정계획, 세수예측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분석체계 상에서 자치단체의 예산의 계획관리 및 집행관리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및 정책유도를 실시
 - 재정계획성 분야는 ‘재정계획’ 영역과 ‘재정집행’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자치단체의 재정계획노력과 재정집행노력에 대해 세부적으로 구분
- 재정계획성 분야 신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실적 분석의 실시
 - 집행실적, 계획적 재정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지표 발굴

2. 재정계획성 분야 신설 검토

□ 검토사항

- 계획성 신설 분야에 대한 분석 목적에 따른 범위 검토
 - 계획성 신설 분야의 분석 목적과 연계된 발굴지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분석범위 검토
- 현행 재정분석 효율성 분야와 계획성 신설 분야의 관계 및 지표 검토
 - 현행 재정 효율성 분야는 과거 기획단계에서 ‘효율성+계획성’ 측면에 따라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따라 향후 계획성 분야의 신설과 맞물려 관계 및 지표상의 조정 필요 유무 검토 필요

- 계획성 지표 발굴과 관련한 데이터 추출 가능성 검토
 - 계획성 분야와 관련된 지표들이 대부분 결산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출이 가능한 바에 따라 향후 데이터 추출 시기 및 가능성 관련 검토
- (가용재원) 가용재원 비율 지표 검토
 - 계획성 재정분석제도 적합성 논의 및 산정기준·산정방식에 대한 세부기준 검토 필요
 - 목표 및 평가방식에 대한 적절성 검토 필요하여 재정계획성 지표 적합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후보지표

- 재정계획성 분야 지표로 활용 가능성 높은 지표 검토
 - 집행률, 잉여금, 이월금, 중기재정계획, 세수예측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분석을 해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분석
 - 집행실적, 계획적 재정운용 결과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지표 발굴에 대해 논의

연말지출비율	설명
개요	연간 세출결산에서 연말 (11월 ~ 12월)에 집행된 지출원인행위액의 비율
정책목적	자치단체가 연말에 비계획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함으로써 비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정집행 관행을 방지
해석 및 특징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측정하는 지표로 연말지출비율이 특이하게 높을수록 불건전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의미
산정방식	$\frac{\text{연말(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text{세출결산액}}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지출원인행위액: 11월~12월 - 대상과목: 자체사업의 시설비 (220, 401-01,02,03,04) - 직속기관 및 사업소분을 제외한 본청분만 해당
대상회계	일반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유형별 평균과 비교

추경예산편성비율	설명
개요	당초예산에 대한 추경규모의 비율과 추경예산편성의 회수를 측정
정책목적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예산관리 능력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추경예산편성의 최소화를 유도
해석 및 특징	예산운영의 계획성·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추경편성 횟수가 적을수록 당초 예산과 최종예산의 금액차이가 적을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건전성이 높음
산정방식	추경편성 횟수 (3회 편성 기준)를 기준으로 5등급 분석 - 3회 이하, 4회, 5회, 6회, 7회 이상 추경예산편성비율 = (추경예산규모 / 당초예산액) * 100 - 재해복구에 의한 추경편성은 제외 (단 횟수는 포함) - 추경예산규모는 연도말 정리추경(최종추경)까지의 규모를 의미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추경편성 3회 이하 추경예산편성비율은 유형별 평균 대비

세입예산반영비율	설명
개요	세입결산액 대비 세입예산액의 비율
정책목적	세입예산 운영의 계획성 제고를 유도
해석 및 특징	지방세입의 예산반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
산정방식	{세입예산액 / (세입결산액 - 전년도 이월액)} * 100 - 세입예산액: 당초 회계연도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당초 회계연도 세입결산액 - 전년도 이월액: 전 회계연도에서 당해 회계연도로 이월된 금액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100% 달성 및 근접

순세계잉여금비율	설명
개요	세입예산의 초과확보 또는 세출예산의 미집행 정도를 결산액과 비교하는 지표
정책목적	세입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 간의 괴리를 측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계획성과 적정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 재정계획을 유도
해석 및 특징	예산편성액과 집행된 결산액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음
산정방식	(순세계잉여금 / 세출결산액) * 100
대상회계	일반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0% 달성 및 근접

예산집행률	설명
개요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예산집행률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방식	$(\text{세출결산액} / \text{예산현액}) * 100$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100% 달성

세입세출총당비율	설명
개요	세출소요액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총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정책목적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표로 세입결산액 대비 당해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세출소요액의 비율을 측정하며 100%에 근접할수록 균형재정운영 상태를 의미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적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지표값이 100% 이상이면 적자이고 100%에 근접할수록 균형재정 상태임
산정방식	$(\text{세출소요액} / \text{세입결산액}) * 100$ - 세출소요액: 당해연도세출결산액 + 이월사업비 + 국도시비집행잔액 + 국도시비미부담액 + 지방채미상환액 - 세입결산액: 당해연도 세입결산 총액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100% 근접

이월액 비율	설명
개요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대비 집행 결과 이월금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이월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방식	$\{(\text{명사이월} + \text{사고이월} + \text{계속비이월}) / \text{세입결산액}\} * 100$ - 이월액은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세출처리상황의 다음연도 이월액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낮을수록 바람직

불용액비율	설명
개요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대비 집행 결과 불용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불용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방식	$\{(\text{집행잔액} - \text{보조금반납금}) / \text{세입결산액}\} * 100$ - 불용액 = 집행잔액 -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은 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상 집행잔액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낮을수록 바람직

집행잔액 비율	설명
개요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대비 집행 결과 집행잔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집행잔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방식	$(\text{집행잔액} / \text{세입결산액}) * 100$ - 집행잔액은 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상 집행잔액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낮을수록 바람직

1) 재정계획성 분야 관련 논의사항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계산에 있어 불분명한 점이 있음
- 계획성에 대하여 예산집행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니면 예산계획에 초점을 맞추는지를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세수예측정확도의 경우 개념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실무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분명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지표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에 포함되는 지표일 수도 있음
- 세수예측정확도의 경우 취·등록세의 비중이 큰 광역시의 반발이 큰 반면 지방소득세의 비중이 큰 기초자치단체들은 문제가 없을 수 있음

- 세수예측정확도의 경우 부동산시장 및 국세와 연동되어 있어 예측이 힘들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신호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월금 비율의 경우 사고이월만 따로 살펴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운영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이월금 등을 계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2) 재정계획성 분야 지표 내용

□ 재정계획성 분야 신규지표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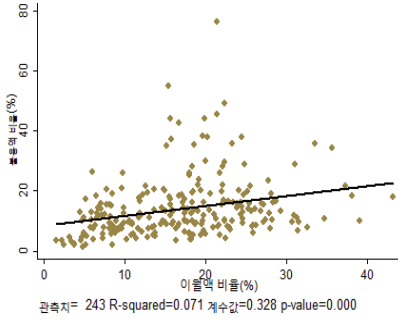
- 재정계획(2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당초예산사용), 지방세예산반영비율(=세수오차비율)
 -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을 통해 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의 예측가능성 및 중장기 재정계획성 제고
 - 세수오차비율을 측정하여 세입 과소계상 등 보수적 예산관행을 개선
- 재정집행(1개): 이불용액비율
 - 이불용액비율로 이·불용액 발생 규모 모니터링 실시 및 자치단체 재정집행 관련 개선 유도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설명
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사업비의 사업예산반영(당해연도) 비율
정책목적	중기지방투자사업의 계획성 제고
해석 및 특징	재정운영의 거시적 계획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산정방식	$(\text{당초사업예산액} / \text{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사업예산액: 당해 회계연도 최종예산의 사업예산총액 - 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상반기에 수립 확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예산총액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없이 긴급시설 복구비를 집행한 경우 이를 제외하여 산정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100% 달성 (절대값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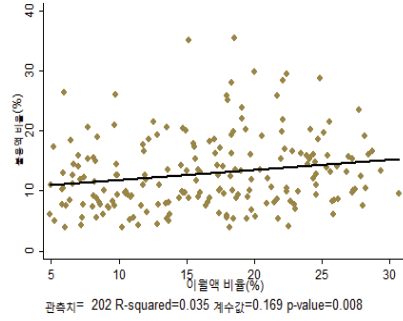
세수오차 비율	설명
개요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세입예산의 계획성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세 세입예산의 당초예산대비 최종예산 비율로 측정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방식	$(\text{당초예산} / \text{세입결산액}) * (50\%) + (\text{최종예산} / \text{세입결산액}) * (50\%)$ - 지표값(절대값)이 1보다 멀어질수록 자치단체가 지방세 세입예산을 과소 또는 과대 편성했다는 의미
대상회계	일반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1에 가까울수록 바람직

이불용액비율	설명
개요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대비 집행 결과 이월금(사고이월중심)과 불용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이불용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방식	$\{(\text{이불용액}) / \text{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 + 불용액 - 이월액은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세출처리상황의 다음연도 이월액 - 기존 이월액비율 산정방식: 세입결산액대비 이월액총액(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비율로 산정하였으나 지자체 이월액 생성원인에 대한 명료화 및 모니터링효과를 위해 산정방식 수정 - 불용액 = 집행잔액 -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은 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상 집행잔액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낮을수록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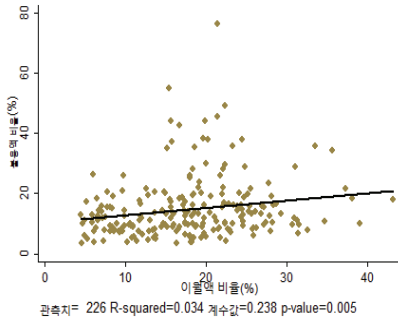
[그림 3-2] 불용액비율-이월액비율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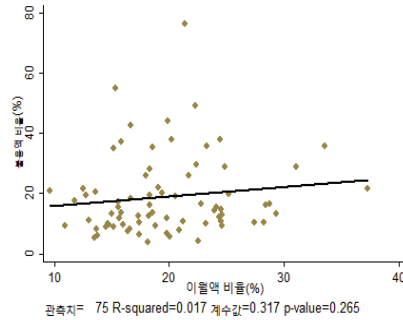
(a)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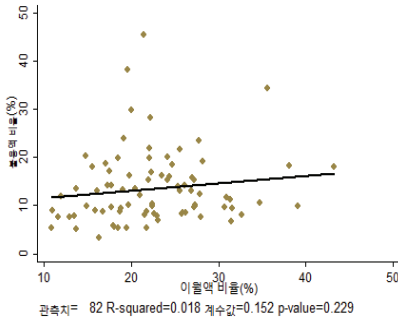
(b) 전체(극단치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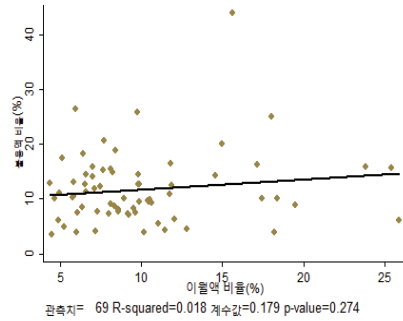
(c) 시·군·구



(d) 시



(e) 군



(f) 구

자료: 2019 재정분석 결과 데이터

주: 극단치는 하위 5%이하, 상위 5%이상 관측치로 정의. 특·광역시·도는 관측치가 너무 적어서 따로 분석하지 않았음

- [그림 3-2]는 FY2018 기준, 불용액과 이월액 비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 [그림 3-2]의 (a)에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상관관계 계수값이 0.328이고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p-value 값이 0.000으로 나타나 불용액과 이월액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그림 3-2]의 (b)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중 불용액과 이월액 비율 하위 5% 이하와 상위 5%이상의 단체들을 제외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상관관계 계수값이 0.169로 (a)에 나타난 결과에 비해 크기가 절반정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두 변수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림 3-2]의 (c)는 지방자치단체들 중 시·군·구만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상관관계 계수값이 0.238이고 p-value 값이 0.005으로 나타나 불용액과 이월액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특광역시도를 포함했을 때와 비교해서는 계수값의 크기가 다소 감소하였음
 - [그림 3-2]의 (d)-(f)는 시·군·구를 각각 따로 분리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를 대상으로 한 상관관계 계수값이 0.317로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군을 대상으로 한 상관관계 계수값은 0.52로 가장 작은 값을 보이고 있음
 - (d)-(f)에 나타난 시·군·구 결과의 경우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 이는 시·군·구를 따로 살펴볼 경우 표본의 수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제5절 당해연도 분기별 분석

1. 기본방향

- 분기별 분석 신설을 통해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현황 및 시책 대응에 관련된 신속집행 등 재정운용노력에 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통계 생성)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제도가 전년도 결산자료 중심으로 지자체들의 재정 운용상태를 전체적으로 확인 해보는 분석제도라는 특성 및 목적에 비교하여 분기별 분석은 당해연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치단체들의 재정운용현황 및 시책대응노력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는 특성과 목적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상의 정책대응 상황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 기대

2. 당해연도 분기별 분석 신설 검토

1) 분기별 분석 검토 지표

검토사항

- 재정운용노력도 - 시책대응 분야 신설을 통해 예산의 신속집행 역할 및 분기별(또는 반기별) 예산집행현황 등 신속집행 유도 측면에서 부합할 수 있는 분석지표 필요
- 해당 재정운용노력 지표에 대한 분기(또는 반기)분석 적합성 검토 필요(데이터 분기별 취합 가능성 등)
- (지표 발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현황을 확인하고 자치단체의 시책대응노력과 관련된 재정운용노력에 대한 분석지표 발굴: (1) 예산의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지출의 확대의 유도를 위하여 분기별(또는 반기별) 예산집행상황, (2) 지방세징수실적, (3) 지방채발행실적 등에 대한 현황 등

- 재정분석 전체 체계와의 관계 및 평가방식 검토 필요
 - 재정분석 전체총점과 개별적으로 인센티브 가점 방식 적용
 - (개별평가방식) 구간별 점수(유형 평균 기준으로 상위, 하위 구간 구분하여 인센티브 부여 [상위구간: 전체 인센티브(총30점) 중 배점 100%, 하위구간: 50% 부여]
 - (합계평가방식) 재정운용노력 분야 각 지표를 구간별 점수화 하여 모두 합한 총계 값이 유형평균 수준 이상이면 전체 인센티브 배점(총30점) 중 100% 부여, 유형평균 수준 이하는 전체 배점 중 50% 부여[예: 각 지표별 점수에서 유형평균 이상은 2점 부여, 유형평균 이하는 1점]

□ 후보지표

- 반기별 집행실적(기능별, 분야별): 기능별 (예: 사회복지 분야, 지역경제 분야 등 주요 현안) 분야에 대한 집행실적을 측정. 분야별 (예: 자체사업, 보조사업 분야 등 주요 분야 별 집행실적을 측정)
- 분기별 분석 후보지표: 분기별 생산 가능 지표 중심으로 자치단체 재정운용노력 확인 및 모니터링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사용
 - 평가 지표(3개): 신속집행율, 일자리사업지표(협력과 추가 검토 예정), 누적징수율
 - 비평가 지표(3개): 채무현황, 지방채 발행현황, 금고잔액 현황
- 분기별 분석 평가방식은 인센티브 가점방식(30점 만점)을 기반으로 평가지표(3개)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실제 재정운영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목적으로 변별력을 주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0점~30점까지 확대)
- 신속집행률: 분기별 신속집행실적대상에 대한 조기집행실적을 측정(지방예산의 불용액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 신속집행률
 - (9월/12월 기준) (집행액 / 신속집행 대상 예산현액) × 100 (%)
- 기능별·분야별 예산집행 현황
 - (9월 기준) (집행액 / 예산현액) × 100 (%)
- 반기별 지방세 누적징수율
 - (9월 기준) (당해연도 징수액 / 지난 최근 3년간 평균징수액) × 100 (%)
- 채무현황 (평가제외: 모니터링 목적)
- 지방채 발행 현황 (평가제외: 모니터링 목적)

지역경제활성화예산비율	설명
개요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당초예산편성 대비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예산 집행 실적
정책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집행 실적 모니터링
해석 및 특징	- 지역경제에 재정지출 규모 및 영향이 큰 기능별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 - 지역경제에 대한 재정지출효과가 양의 효과로 추정되는 기능별 예산에 대한 집행 실적 모니터링
산정방식	반기 실적(6월기준): {(지역경제활성화예산 집행액) / 지역경제활성화 예산현액} × 100 (%) - 지역경제활성화예산은 자치단체 기능별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기능별 예산 합계 - 지역경제활성화예산: 5개 기능별 예산의 합계 (= 교육 + 사회복지 + 산업 중소기업 + 수송 및 교통 + 국토 및 지역개발)
대상회계	일반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n.a.

사회복지예산비율	설명
개요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당초예산편성 대비 사회복지비 관련 예산 집행 실적
정책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기능 예산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재정지출을 통한 사회복지비 관련 예산 집행 실적 모니터링
해석 및 특징	- 예산상 규모 및 영향이 큰 사회복지 기능별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
산정방식	반기 실적(6월기준): {(사회복지비 집행액) / 사회복지비 예산현액} × 100 (%) - 자치단체 기능별 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기능별 예산 합계
대상회계	일반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n.a.

보조사업비율/ 자체사업비율	설명
개요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당초예산편성 대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 집행 실적
정책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분기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재정 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집행 실적 모니터링
해석 및 특징	- 재정지출 규모 및 영향이 큰 분야별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 모니터링 - 모니터링을 통해 보조사업 실적 및 자체사업 실적에 대한 원인 검토 및 외부 환경적 영향에 대한 자치단체 특성 파악
산정방식	반기 실적(6월 기준): {보조사업 집행액 / 보조사업 예산현액} × 100(%) ; {자체사업 집행액 / 자체사업 예산현액} × 100(%) - 자치단체 분야별 예산 중 보조사업 분야(자체사업 분야) 관련 예산 개별 합계
대상회계	일반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n.a.

반기별 지방세 누적징수율	설명
개요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지방세 징수율(누적) 실적
정책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세입예산 운용노력도 관련 실적 모니터링
해석 및 특징	- 세입예산에 대한 운용노력 관련 집행실적 모니터링
산정방식	반기 실적(6월 기준): {당해연도 징수액 /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 × 100 (%) - 재정운용노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최근 연평균 징수액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자치단체 징수노력에 대한 실적 비교
대상회계	일반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n.a.

신속집행율	설명
개요	자치단체의 신속집행 대상에 대한 당해연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예산집행 실적
정책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 장려 및 조기집행 유도
해석 및 특징	- 신속 예산집행 효과가 큰 예산대상에 대한 집행실적 비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노력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예산의 불용액 최소화 유도
산정방식	분기/반기 실적(3월/6월기준): {(신속집행액) / 신속집행대상 예산현액} × 100 (%) - 신속집행 관련하여 선별적으로 지정한 분야에 대한 신속집행 대상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목표(기준치)·평가방법	n.a.

2) 분기별 분석 관련 논의사항

- 예산집행률이나 지방세징수실적은 유형별 혹은 동종별로 분석하는 방식에 대하여 검토 및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분기별 분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 너무 많은 지표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소수의 지표를 이용하여 간단한 보고서 형식으로 결과물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일자리 사업비 데이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 정의가 불분명한 문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분기별로 이용가능 할 경우 분기별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 있음
- 신속집행지표의 의미가 분기별 분석 목적과 부합하는 바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예산(기능별) 관련 지표에 대해 대체
- 검토사항 중 위기관리제도 보완지표들은 결산자료 이용 지표로써 분기별 분석 적용에 부적합(국고보조금/자주재원 비율, 사회복지비 시군구매칭부담/자주재원, 인구규모 & 인구증가율, GRDP 증가율)
- 결산자료 이용 참고지표들은 검토결과 분기별 분석 지표 적용 어려움 / 분기별 지표 산출 제한 및 데이터 부재(예: 지역경제활성화예산비율, 사회복지지비예산비율, 보조사업/자체사업비율)
 - 사회복지지비예산비율, 보조사업/자체사업비율은 향후 결산자료를 사용하여 재정분석 본지표로 사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3) 분기별 분석 지표 내용

분기별 분석 최종 후보지표 검토

- 분기별 분석 지표는 분기별 생산 가능 지표 중심으로 자치단체 재정운용능력 확인 및 모니터링 목적에 부합하는 후보 지표들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할 것을 결정

- 평가관련 후보지표(5개): 신속집행율, 일자리사업지표, 누적징수율, 보조사업집행비율, 자체사업집행비율
 - 非평가 후보지표(3개): 채무현황, 지방채 발행현황, 금고잔액 현황
- 분기별 분석 및 재정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타 단체들과 구별되는 단체들에 대해 재정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2단체 지정하여 연말에 재정컨설팅 수행 검토(11월-12월 2달간)

제4장

2020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

제1절 2020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

제2절 배점 및 가중치 조정

제4장

2020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

KRILA

제1절

2020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

1. 2020년도 지표체계 기본방향

- 재정분권, 신속재정집행,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표체계 구성
 - 경기활성화,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확대 등 지방재정관련 현안이슈의 재정분석에의 반영도 제고
 - 지표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건전성 지표체계 정립
- 재정환경 변화 관련 현안이슈 대응을 위한 지표체계 구성
 -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전반적인 동향 및 현안이슈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
 - 재정분석지표의 현안이슈분석 및 재정컨설팅에의 활용 확대를 통해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지표체계의 반영도 제고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정성평가 관련 지표에 대한 보완을 통해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정부중점 시책 반영, 투명성, 정확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운영을 유도
 - 주요 세출지표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을 유도

[표 4-1] 2020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구분	목표	재정분석지표		주요사항	분석범위 (대상)	
재정 건전성	수지관리	통합재정수지비율		평가방식 개선 (기존 표준점수 활용 상대평가 방식 → 등급화 전환)		
	채무 및 부채관리	관리채무비율		평가방식 개선 (기존 표준점수 활용 상대평가 방식 → 등급화 전환)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 관리	공기업부채비율		평가방식 개선 (기존 표준점수 활용 상대평가 방식 → 등급화 전환)			
재정 효율성	세입 관리	수입 관리	자체수입비율 (증감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비율:증감률 5:5	FY2019 결산
			지방세징수율(제고율)		비율:증감률 5:5	
		징수 관리	채납액관리비율 (증감률)	지방세체납액 세외수입체납액	비율:증감률 5:5	
	외부 지원 관리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비율:증감률 5: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비율:증감률 5:5		
		세출 관리	내부 경비 관리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자치단체의 재정계획 및 재정집행 관련 분석을 위한 지표 (각 후보지표의 상징성, 효과 및 중복성 등에 따라 대표지표들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지표들은 참고지표 활용)	FY2019 결산	
	재정집행	이불용액비율				
재정 계획성		세수오차비율				

2. 2020년 지방재정분석 지표의 주요 특징

1) 지표체계

- 재정분권 확대, 신속집행,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지출의 확대 등 지방재정 관련 현안이슈의 재정분석에의 반영도 제고를 위해 재정컨설팅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자체노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구성
- 전년도에 이어서 FY2019년도 역시 국가경제 침체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재정분석을 통해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대응과 역할에 대한 재정운용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지표체계 구성
- 재정건전성: 수지관리, 채무 및 부채관리, 공기업관리
 -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 재정보수율성: 세입효율성(수입관리, 징수관리), 세출효율성(외부지원관리, 내부경비관리)
 - **세입효율성**
 - (수입관리) 자체수입비율(증감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 (징수관리)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액, 세외수입체납액
 - **세출효율성**
 - (외부지원관리)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 (내부경비관리) 자체경비비율
- 재정계획성: 재정계획, 재정집행
 - (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 (재정집행) 이불용액비율

2) 재정건전성 분야 등급화 평가방식 도입

○ 재정건전성 분야 평가방식 개선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들은 건전성 분야에서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관리채무비율 등에 대해 지표개선 노력을 투입한 결과가 동일한 노력을 투입한 효율성 분야 지표들에 비해 개선노력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 상황에 대해 평가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전성 분야 측면에서 소극적인 재정운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하도록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 개선 필요
- 별도로 최근 법령기준 변화에 따라 평가방식 개선이 요구되는 지표 발생 (공기업부채비율)

○ 재정건전성 분야 일부 지표에 대한 등급화 평가방식 도입

- 2019년도 기준 재정건전성 6개 지표 중 자치단체들의 지표값 분포의 밀집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표들에 대해 등급화 평가방식 도입 추진
-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및 공기업부채비율**에 대한 평가 등급기준 설정 및 등급화 평가 방식 도입
-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값 분포를 기반으로 해당 지표값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들 등급화 실시(자치구 관련 별도 등급기준 설정)
- 관리채무비율 역시 지표값 분포를 기반(BTL 포함)으로 해당 지표값 관리를 위해 건전성 개선 노력하는 자치단체들 대상으로 등급화 평가 기준 결정
- 공기업부채비율은 법령으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등급화 평가 실시
 -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부채관리 기준을 명시
 -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공사채 발행한도를 연도별 부채목표비율과 연계하여 공사채 발행 및 사후 관리

3) 재정효율성 신규지표

- (자체경비비율)세출관리 신규지표
 - 세출관리 중 내부경비관리 지표로 기존에 사용 중인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 지표를 포함하여 내부경비관리 영역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지표 발굴 필요
 - 여러 후보지표 중에서 내부경비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물건비(200) 내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방안 고려
- (지표 적용범위) 자체경비비율 지표의 산출범위를 일반회계로 결정
 - 향후 차년도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자체경비비율」 지표의 산정범위 조정과 결부되어 산출범위 역시 검토 필요성 제기

4) 재정계획성 분야 신설

- 재정계획성 분야 신설
 -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재정분권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운용에 대한 계획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역할
 - 집행률, 이월금, 중기재정계획, 세수예측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분석체계 상에서 자치단체의 예산의 계획관리 및 집행관리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및 자체 계획능력 강화를 위한 유도
- 재정계획성 측정을 위한 지표 발굴
 - 재정계획성 분야는 ‘재정계획’ 관리영역과 ‘재정집행’ 관리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과 **재정집행**에 대해 세부 관리목적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및 정책 유도 지표 발굴
 - 집행실적, 계획적 재정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지표 발굴

5) 당해연도 데이터를 이용한 분기별 분석 시범실시

○ 당해연도 재정운용노력·시책대응도 분석 실시

-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현황 및 시책대응에 관련된 신속집행 등 재정운용노력에 관한 분석을 실시

○ 당해연도 지방재정 모니터링체계 구축

- 분기별분석은 당해연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치단체들의 재정운용현황 및 시책대응노력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는 특성과 목적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상의 정책대응 상황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 기대

○ 분기별 분석 지표체계는 당해연도 생산 가능 지표 중심으로 구성

- 분기별 분석 지표는 당해연도 분기별 생산 가능 지표 중심으로 자치단체 재정운용노력 확인 및 모니터링 목적에 부합하는 후보 지표들을 구성
- 분기별 분석 지표들을 포함하여 분기별 분석을 실시(2회; 3/4분기, 4/4분기)

6) 참고지표

- 2019년도 재정분석 참고지표(17개) 존치 및 2020년도 신규 참고지표 6개 추가(순세계잉여금비율, 연말지출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 경상수지비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2020년도 참고지표 합계 23개

- 전년도 참고지표(2019년도 17개)는 모두 기존 데이터 중요성 및 존치 필요성에 따라 지정

※ 2019년도 참고지표 18개 중 ‘불용·이월액비율’은 2020년도 본 지표 사용으로 참고지표에서 제외(총 17개)

[표 4-2] 2019년도와 2020년도 지표체계 비교

2019년 지표체계			2020년 지표체계			
분야 (1,000점)	지표	비고	분야 (1,000점)	지표	비고	
Ⅰ. 재정 건전성 (500점)	1. 통합재정수지비율		Ⅰ. 재정 건전성 (300점)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참고지표 이동	
	3. 관리채무비율			2. 관리채무비율		
	4. 통합유동부채비율			3. 통합유동부채비율		
	5. 공기업부채비율(공단 포함)			4. 공기업부채비율(공단 포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참고지표 이동	
Ⅱ. 재정 효율성 (500점)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Ⅱ. 재정 효율성 (500점)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1. 출연출자전출금비율(증감률)			9. 출연출자전출금비율(증감률)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참고지표 이동	
			업무추진비절감률	참고지표 이동		
			10. 자체경비비율	신규 통합지표		
Ⅲ. 재정 책임성 (감점 상한 없음)	14. 재정 법령준수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5점	Ⅲ. 재정 계획성 (200점)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신규지표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5점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재방재정법위반	건수 당 -2점			
		보조금관리법률위반	건수 당 -2점			
		지방회계법 위반	건수 당 -2점			
		지방계약법 위반	건수 당 -2점			
		재정 책임성	재정 법령준수		지표 폐지	

제2절 배점 및 가중치 조정

1. 분야별 배점·가중치 조정

1) 기본 방향

- 학문적인 엄밀성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의미를 내포함
 - 첫째,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기준을 도출하기는 했는데, 각 기준 간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즉, a기준이 b기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 기준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임
 - 둘째, 기관 간 비교를 할 때 모든 기관을 획일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이라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때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은 기관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기준이나 지표별 가중치를 달리하는 것이 될 것임
 - 셋째, 기준이나 지표는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통상적임. 이는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재정분석의 경우에도 재정분석의 목적에 더 잘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기준이나 지표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새로운 기준 또는 지표를 도입한 후 다른 지표 또는 기준과 동일한 비중을 각 기준이나 지표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누적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낮은 수준의 가중치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함
- 가중치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하향식 접근방법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상향식 접근방법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하향식 접근방법이란 분야→영역→지표의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향식 접근방법이란 지표→영역→분야의 순서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함. 가중치는 통상적으로 하향식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음. 재정분석 역시 하향식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둘째,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중 전략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함. 기본적으로는 신규분야의 경우 누적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음. 투입과 과정보다는 결과에 투입보다는 과정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셋째,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가중치에 차이를 둘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가중치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현재는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분야별 지표별 가중치에 차이를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현재를 살펴보면 하향식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됨. 다만, 재정계획성이라는 분야가 새로 신설된바 이에 대한 가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이때 1,000점의 배점을 상향할 것인지 아니면 1,000점을 고정하고 신설되는 재정계획성에 일부를 재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물론 지표 중에서도 신설되는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가중치 역시 재배분되어야 할 것임. 또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가중치에 차이가 없는데, 차이를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2) 검토결과

- 재정분석 분야별 비중의 기본틀을 유지하여 재정분석 지표체계의 안정성 및 신뢰성 담보를 추구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노력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

-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을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비중을 상향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
- 재정분석에 대한 가중치에 한정하여 방향을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투입-과정(집행)-성과라는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가중치에만 한정하여 대안을 제안하는 방안 적용 가능
 - 하향식 접근방법을 채택함
 - 현재와 같이 1,000점을 만점으로 설정함
 -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을 각각 300점 500점을 부여함
 - 재정계획성에 200점을 부여함
 - 재정건전성의 각 영역과 재정효율성의 각 영역을 유사한 비율로 감하되 지표가 추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함
 - 재정계획성은 각 영역에 동일한 비중으로 가중치를 부여함

2. 지표별 가중치 검토

- 현행 분야별 배점 체계 유지
 - (FY2018) 재정건전성 대 재정효율성: 500점 : 500점
 - 참고지표 이동하는 지표들에 대해 세부지표의 가중치 재조정
- 재정계획성 분야 신설을 고려해 가중치 비중 조정
 - (FY2019) 재정건전성 대 재정효율성 대 재정계획성 : 300점 : 500점 : 200점

[표 4-3] 2020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 가중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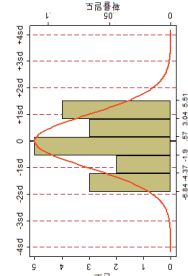
1차 분류(분야)	2차 분류(영역)	재정분석지표		비고	
재정 건전성 (300점)	수지 관리 (12%)	통합재정수지비용		12%	
	채무 관리 (12%)	관리채무비용		8%	
		통합유동부채비용		4%	
	공기업 관리 (6%)	공기업부채비용		6%	
재정 효율성 (500점)	세입 (25%)	수입관리 (7%)	자체수입비용 (증감률)	지방세수입(4%)	7%
				세외수입(3%)	
	징수관리 (1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6%	
		체납액관리비용 (증감률)	지방세체납액(6%)	12%	
	세외수입체납액(6%)				
	세출 (25%)	외부지원관리 (14%)	지방보조금비용(증감률)		7%
출자출연전출금비용(증감률)			7%		
내부경비관리 (11%)		(신규) 자체경비비용(증감률)		11%	
재정 계획성 (200점)	재정계획(10%) (신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용		5%	
		세수오차비용		5%	
	재정집행(10%) (신규)	이불용액비용		10%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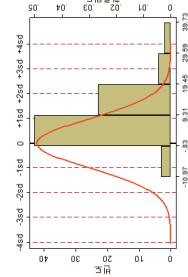
재정건전성 등급화방식 지표값 분포 자료 지표추출 매뉴얼

[참고: 표 1] 자치단체 종류별 종합재정수지비율 분포-2019년(FY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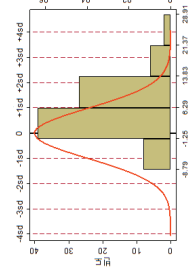
	-4SD 이하	-3SD 초과	-2SD 이하	-1SD 초과	0 초과	+1SD 이하	+2SD 이하	+3SD 초과	+4SD 초과	총 단체 수	최대값	최소값
특광역시도	-14.4	-10.80	-7.20	-3.60	0	3.60	7.20	10.80	14.40	17 (100.00%)	5.52%	-6.84%
빈도	0	0	4	3	8	2	0	0	0			
(퍼센트)	(0.00%)	(0.00%)	(23.53%)	(17.65%)	(47.06%)	(11.76%)	(0.00%)	(0.00%)	(0.00%)			
시	-32.49	-24.36	-16.24	-8.12	0	8.12	16.24	24.36	32.49	75 (100.00%)	39.74%	-10.97%
빈도	0	0	1	5	37	22	6	3	1			
(퍼센트)	(0.00%)	(0.00%)	(1.33%)	(6.67%)	(49.33%)	(29.33%)	(8.00%)	(4.00%)	(1.33%)			
군	-24.57	-18.43	-12.29	-6.14	0	6.14	12.29	18.43	24.57	82 (100.00%)	28.92%	-8.79%
빈도	0	0	2	9	33	29	7	0	2			
(퍼센트)	(0.00%)	(0.00%)	(2.44%)	(10.98%)	(40.24%)	(35.37%)	(8.54%)	(0.00%)	(2.44%)			
자치구	-19.03	-14.27	-9.51	-4.76	0	4.76	9.51	14.27	19.03	69 (100.00%)	20.41%	-4.36%
빈도	0	0	0	4	30	25	6	2	2			
(퍼센트)	(0.00%)	(0.00%)	(0.00%)	(5.80%)	(43.48%)	(36.23%)	(8.70%)	(2.90%)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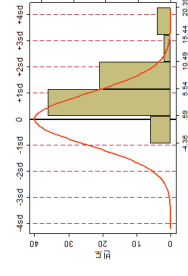
(가) 특·광역시·도



(나) 시



(다)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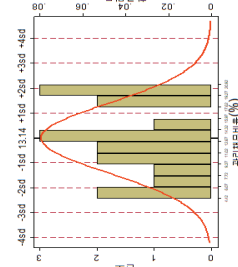
(라) 자치구

- [참고: 표 1]은 2019년(회계년도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특·광역시·도, 시, 군, 그리고 자치구로 각각 구분하여 통합재정수지비율의 분포를 살펴봄
 - 각 지방자치단체 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세입과 세출이 같을 때의 값인 0을 기준으로 각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에 해당하는 구간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얼마이고(표에서 “구간 별 SD”) 이 구간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되는지를(표에서 “빈도 (퍼센트)”) 계산하였음
 - 예를 들어, [표 1]에 나타난 특·광역시·도의 경우 0에서 +1SD 떨어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60이고 0에서 3.60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갖는 특·광역시·도는 8개가 존재하며 이는 전체 특·광역시·도의 47.06%를 차지함
 - 마찬가지로, [표 1]에 나타난 시의 경우 0에서 -2SD 떨어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6.24이고 0에서 -1SD 떨어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8.12이며 이 구간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갖는 시는 1개가 존재함
 - 해당 구간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음영으로 표시하였음
 - 먼저 특·광역시·도의 경우 가장 많은 특·광역시·도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0과 +1SD 사이로 0에서 3.60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특·광역시·도가 해당되는데 전체 17개 특·광역시·도 가운데 47.06%인 8개 특·광역시·도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0과 +1SD 사이 다음으로 특·광역시·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분포는 -2SD 초과 -1SD 이하의 범위로 -7.20에서 -3.60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4개의 특·광역시·도가 포함되고 있으며 -1SD와 0 사이에 3개, 그리고 +1SD와 +2SD 사이에 2개 특·광역시·도가 각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광역시·도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최대값은 5.52이고(광주광역시) 최소값은 -6.84로(울산광역시) 나타남
 - 시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0과 +1SD 사이로 0에서 8.12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시가 해당되는데 전체 75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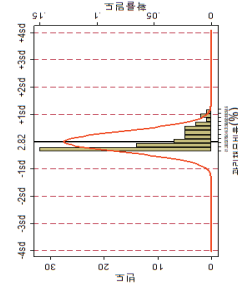
- 가운데 49.33%인 37개 시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0과 +1SD 사이 다음으로 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분포는 +1SD 초과 +2SD 이하의 범위로 8.12에서 16.24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22개의 시가 포함되고 있으며 +2SD와 +3SD 사이에 6개, -1SD와 0 사이에 5개 시 등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최대값은 39.74이고(경기도 과천시) 최소값은 -10.97로(경기도 시흥시) 나타남
 - 군의 경우 가장 많은 군이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0과 +1SD 사이로 0에서 6.14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군이 해당되는데 전체 82개 군 가운데 40.24%인 33개 군이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0과 +1SD 사이 다음으로 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분포는 +1SD 초과 +2SD 이하의 범위로 6.14에서 12.29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29개의 군이 포함되고 있으며 -1SD와 0 사이에 9개, +2SD와 +3SD 사이에 7개 군 등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군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최대값은 28.92이고(경북 영덕군) 최소값은 -8.79로(경남 하동군) 나타남
 - 마지막으로 자치구의 경우 가장 많은 자치구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0과 +1SD 사이로 0에서 4.76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자치구가 해당되는데 전체 69개 자치구 가운데 43.48%인 30개 자치구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0과 +1SD 사이 다음으로 자치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분포는 +1SD 초과 +2SD 이하의 범위로 4.76에서 9.51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25개의 자치구가 포함되고 있으며 +2SD와 +3SD 사이에 6개, -1SD와 0 사이에 4개의 자치구 등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최대값은 20.41이고(서울 강동구) 최소값은 -4.36로(울산 북구) 나타남
 - [참고: 표 1]에 포함된 그림 (가)~(라)는 [참고: 표 1]의 각 자치단체 유형별 결과를 히스토그램과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음

[참고: 표 2] 자치단체 종류별 관리채무비율 분포-2019년(FY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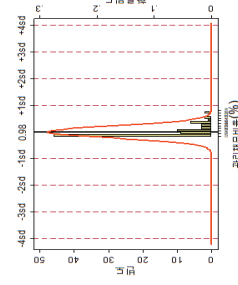
특광역시도	구간별 SD	-4SD 이하	-3SD 초과 -3SD 이하	-2SD 초과 -2SD 이하	-1SD 초과 0 이하	0 초과 +1SD 이하	+1SD 초과 +2SD 이하	+2SD 초과 +3SD 이하	+3SD 초과 +4SD 이하	+4SD 초과	총 단체 수	최대값	최소값
		(0.00%)	(5.88%) (17.65%)	(17.65%) (29.41%)	(29.41%) (51.29%)	(51.29%) (73.17%)	(73.17%) (89.82%)	(89.82%) (95.70%)	(95.70%) (99.00%)	(99.00%) (100.00%)			
특광역시도	구간별 SD	-1.27	2.33	5.94	9.54	13.14	16.74	20.34	23.94	27.54	17	20.92%	4.42%
	빈도 (퍼센트)	0 (0.00%)	1 (5.88%)	3 (17.65%)	5 (29.41%)	4 (23.53%)	3 (17.65%)	1 (5.88%)	0 (0.00%)	0 (0.00%)	0 (0.00%)	(100.00%)	
시	구간별 SD	-29.67	-21.55	-13.42	-5.30	2.82	10.94	19.06	27.18	35.30	75	12.57%	0.00%
	빈도 (퍼센트)	0 (0.00%)	0 (0.00%)	0 (0.00%)	46 (61.33%)	28 (37.33%)	1 (1.33%)	0 (0.00%)	0 (0.00%)	0 (0.00%)	0 (0.00%)	(100.00%)	
군	구간별 SD	-23.59	-17.44	-11.30	-5.16	0.98	7.13	13.27	19.41	25.55	82	5.85%	0.00%
	빈도 (퍼센트)	0 (0.00%)	0 (0.00%)	0 (0.00%)	50 (60.98%)	32 (39.0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00.00%)	
자치구	구간별 SD	-18.70	-13.95	-9.19	-4.43	0.32	5.08	9.84	14.59	19.35	69	4.11%	0.00%
	빈도 (퍼센트)	0 (0.00%)	0 (0.00%)	0 (0.00%)	51 (73.91%)	18 (26.09%)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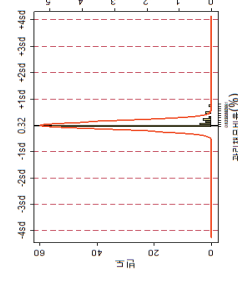
(가) 특·광역시도



(나) 시



(다) 군



(라) 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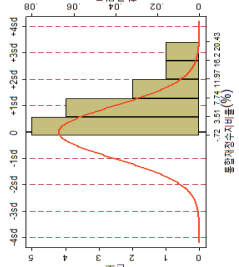
- [참고: 표 2]는 2019년(회계년도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채무비율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특·광역시·도, 시, 군, 그리고 자치구로 각각 구분하여 [참고: 표 1]과 유사한 방법으로 관리채무비율의 분포를 살펴봄
 - 단 [참고: 표 2]의 경우에는 [참고: 표 1]과 같이 0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별 평균 관리채무비율을 중심으로 각 SD에 해당하는 구간의 관리채무비율 값과 구간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를 계산하였음
 - 먼저 특·광역시·도의 경우 가장 많은 특·광역시·도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1SD와 평균 사이로 9.54에서 13.14 사이의 관리채무비율을 가지는 특·광역시·도가 해당되는데 전체 17개 특·광역시·도 가운데 29.41%인 5개 특·광역시·도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1SD와 평균 사이 다음으로 특·광역시·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분포는 +1SD 초과 +2SD 이하의 범위로 16.74에서 20.34 사이의 관리채무비율을 가지는 4개의 특·광역시·도가 포함되고 있으며 -1SD와 평균, 그리고 평균과 +1SD 사이에 3개 특·광역시·도가 각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광역시·도의 경우 관리채무비율의 최대값은 20.92이고(부산광역시) 최소값은 4.42로(경상남도) 나타남
 - 시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1SD와 평균 사이로 -5.30에서 2.82 사이의 관리채무비율을 가지는 시가 해당되는데 전체 75개 시 가운데 61.33%인 46개 시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1SD와 평균 사이 다음으로 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분포는 평균 초과 +1SD 이하의 범위로 2.82에서 10.94 사이의 관리채무비율을 가지는 28개의 시가 포함되고 있으며 +1SD와 +2SD 사이에 나머지 1개 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의 경우 관리채무비율의 최대값은 12.57이고(경북 구미시) 최소값은 0.00으로(경기도 고양시 등 17개 단체) 나타남
 - 군의 경우 가장 많은 군이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1SD와 평균 사이로 -

- 5.16에서 0.98 사이의 관리채무비율을 가지는 군이 해당되는데 전체 82개 군 가운데 60.87%인 50개 군이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1SD와 평균 사이 다음으로는 평균 초과 +1SD의 범위로 나머지 32개 군 모두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군의 경우 관리채무비율의 최대값은 5.85이고(전남 강진군) 최소값은 0.00로(강원 고성군 등 37개 단체) 나타남
 - 마지막으로 자치구의 경우 가장 많은 자치구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1SD와 평균 사이로 -4.43에서 0.32 사이의 관리채무비율을 가지는 자치구가 해당되는데 전체 69개 자치구 가운데 73.91%인 51개 자치구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1SD와 평균 사이 다음으로는 평균 초과 +1SD의 범위로 나머지 18개 자치구 모두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의 경우 관리채무비율의 최대값은 4.11이고(서울 강남구) 최소값은 0.00으로(대구 남구 등 48개 단체) 나타남
 - [참고: 표 2]에 포함된 그림 (가)~(라)는 [참고: 표 2]의 각 자치단체 유형별 결과를 히스토그램과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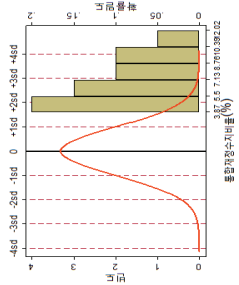
[참고: 표 3] 재정분석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통합재정수지비율 분포 -2019년(FY2018)

	구간 별 SD	빈도 (퍼센트)	-4SD 이하	-4SD 초과 -3SD 이하	-3SD 초과 -2SD 이하	-2SD 초과 -1SD 이하	-1SD 초과 0 이하	0 초과 +1SD 이하	+1SD 초과 +2SD 이하	+2SD 초과 +3SD 이하	+3SD 초과 +4SD 이하	+4SD 초과	총 단체 수	최대값	최소값
			(0.00%)	(0.00%)	(0.00%)	(0.00%)	(7.69%)	(61.54%)	(15.38%)	(7.69%)	(0.00%)	(0.00%)			
서울-가	구간 별 SD	빈도 (퍼센트)	-23.77	-23.77 -17.83	-17.83 -11.89	-11.89 -5.94	-5.94 0	0 5.94	5.94 11.89	11.89 17.83	17.83 23.77	23.77	13 (100.00%)	20.41%	-0.72%
	빈도 (퍼센트)		(0.00%)	(0.00%)	(0.00%)	(0.00%)	(7.69%)	(61.54%)	(15.38%)	(7.69%)	(0.00%)	(0.00%)			
서울-나	구간 별 SD	빈도 (퍼센트)	-9.64	-9.64 -7.23	-7.23 -4.82	-4.82 -2.41	-2.41 0	0 2.41	2.41 4.82	4.82 7.23	7.23 9.64	9.64	12 (100.00%)	12.00%	3.87%
	빈도 (퍼센트)		(0.00%)	(0.00%)	(0.00%)	(0.00%)	(0.00%)	(0.00%)	(16.67%)	(50.00%)	(16.67%)	(16.67%)			
광역-가	구간 별 SD	빈도 (퍼센트)	-18.22	-18.22 -13.67	-13.67 -9.11	-9.11 -4.56	-4.56 0	0 4.56	4.56 9.11	9.11 13.67	13.67 18.22	18.22	22 (100.00%)	17.86%	-4.36%
	빈도 (퍼센트)		(0.00%)	(0.00%)	(0.00%)	(13.64%)	(50.00%)	(50.00%)	(31.82%)	(0.00%)	(4.55%)	(0.00%)			
광역-나	구간 별 SD	빈도 (퍼센트)	-19.55	-19.55 -14.66	-14.66 -9.78	-9.78 -4.89	-4.89 0	0 4.89	4.89 9.78	9.78 14.66	14.66 19.55	19.55	22 (100.00%)	19.59%	0.21%
	빈도 (퍼센트)		(0.00%)	(0.00%)	(0.00%)	(0.00%)	(0.00%)	(50.00%)	(40.91%)	(0.00%)	(4.55%)	(4.55%)			
시-가	구간 별 SD	빈도 (퍼센트)	-16.48	-16.48 -12.36	-12.36 -8.24	-8.24 -4.12	-4.12 0	0 4.12	4.12 8.24	8.24 12.36	12.36 16.48	16.48	15 (100.00%)	11.77%	-0.56%
	빈도 (퍼센트)		(0.00%)	(0.00%)	(0.00%)	(20.00%)	(26.67%)	(20.00%)	(33.33%)	(0.00%)	(0.00%)	(0.00%)			
시-나	구간 별 SD	빈도 (퍼센트)	-41.32	-41.32 -30.99	-30.99 -20.66	-20.66 -10.33	-10.33 0	0 10.33	10.33 20.66	20.66 30.99	30.99 41.32	41.32	21 (100.00%)	31.17%	-10.97%
	빈도 (퍼센트)		(0.00%)	(0.00%)	(0.00%)	(4.76%)	(4.76%)	(57.14%)	(14.29%)	(14.29%)	(4.76%)	(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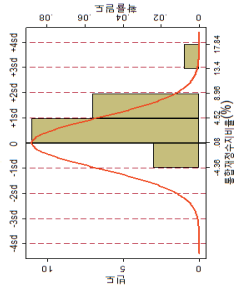
		-4SD 이하	-4SD 초과 -3SD 이하	-3SD 초과 -2SD 이하	-2SD 초과 -1SD 이하	-1SD 초과 0 이하	0 초과 +1SD 이하	+1SD 초과 +2SD 이하	+2SD 초과 +3SD 이하	+3SD 초과 +4SD 이하	+4SD 초과	총 단체 수	최대값	최소값
시·도	구간 별 SD	-38.98	-38.98	-29.23	-19.49	-9.74	0	9.74	19.49	29.23	38.98	19 (100.00 %)	39.74%	-3.25%
	빈도 (퍼센트)	0 (0.00%)	0 (0.00%)	0 (0.00%)	0 (0.00%)	1 (5.29%)	9 (47.37%)	8 (42.11%)	0 (0.00%)	0 (0.00%)	0 (0.00%)	1 (5.26%)		
시·라	구간 별 SD	-22.45	-22.45	-16.84	-11.23	-5.61	0	5.61	11.23	16.84	22.45	20 (100.00 %)	20.67%	0.26%
	빈도 (퍼센트)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 (35.00%)	5 (25.00%)	5 (25.00%)	3 (15.00%)	0 (0.00%)	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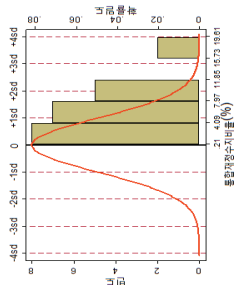
(가) 서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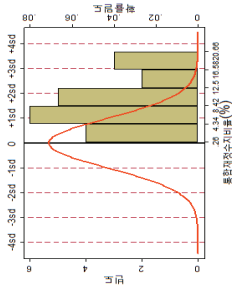
(나) 서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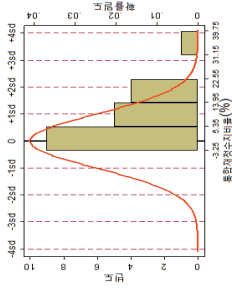
(다) 광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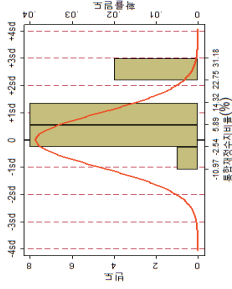
(라) 광역-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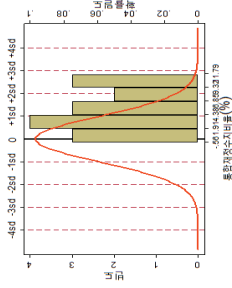
(가) 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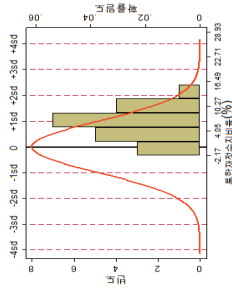
(사) 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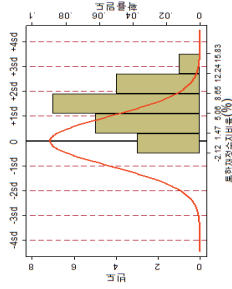
(바) 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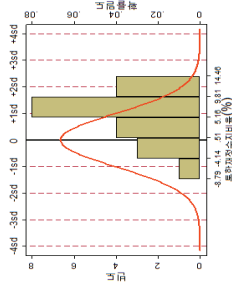
(마) 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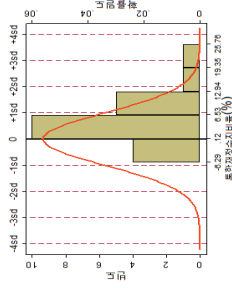
(파) 군-라



(카) 군-다



(차) 군-나



(자) 군-가

- [참고: 표 3]은 2019년(회계년도 2018)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참고: 표 1]과의 차이점은 지방자치단체 중 특·광역시·도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인구 및 재정규모 등을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들을 유형별로 세분화 하여 통합재정수지비율의 분포를 살펴봤다는 점임
 - ‘서울-가’와 ‘서울-나’는 자치구 중 서울에 위치한 자치구를 포함하며 ‘광역시-가’와 ‘광역시-나’는 자치구 중 서울을 제외한 특·광역시·도에 위치한 자치구를 포함하고 있음²⁾
 - 먼저 서울-가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가장 많은 자치구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0과 +1SD 사이로 0에서 5.94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자치구가 해당되는데 전체 13개 자치구 가운데 61.54%인 8개 자치구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1SD와 평균 사이 다음으로 +1SD 초과 +2SD 이하 범위에 2개 자치구가 포함되고 있으며 -1SD 초과 0이하, +2SD 초과 +2SD 이하, 그리고 +3SD 초과 +4SD 이하 범위에 각각 1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가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최대값은 20.41이고(서울 강동구) 최소값은 -0.72로(서울 강서구) 나타남
 - 서울-나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가장 많은 자치구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2SD와 +3SD 사이로 4.82에서 7.23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자치구가 해당되는데 전체 12개 자치구 가운데 50.00%인 12개 자치구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2SD와 +3SD 사이 이외에 +1SD와 +2SD 사이, +3SD와 +4SD, 그리고 +4SD 초과에 각각 2개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나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최대값은 12.00이고

2) 각 유형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세부 목록은 FY201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19)를 참고

- (서울 용산구) 최소값은 3.87로(서울 구로구) 나타남
- 광역-가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가장 많은 자치구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0과 +1SD 사이로 0에서 4.56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자치구가 해당되는데 전체 22개 자치구 가운데 50.00%인 11개 자치구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0과 +1SD 사이 다음으로 +1SD와 +2SD 사이에 7개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어 0에서 +2SD 사이에 대부분의 자치구가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가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최대값은 17.86이고 (부산 강서구) 최소값은 -4.36으로(울산 북구) 나타남
 - 광역-나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가장 많은 자치구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0과 +1SD 사이로 0에서 4.89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자치구가 해당되는데 전체 22개 자치구 가운데 50.00%인 11개 자치구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0과 +1SD 사이 다음으로 +1SD와 +2SD 사이에 9개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어 광역-가와 마찬가지로 0에서 +2SD 사이에 대부분의 자치구가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나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최대값은 19.59이고 (광주 동구) 최소값은 0.21로(부산 사하구) 나타남
 - 시-가에 속한 시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2SD과 +3SD 사이로 8.24에서 12.36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시가 해당되는데 전체 15개 자치구 가운데 33.33%인 5개 시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2SD과 +3SD 사이 다음으로 0과 +1SD 사이에 4개 시가 포함되어 있고 -1SD와 0 사이, 그리고 +1SD과 +2SD 사이에 각각 3개 시가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가에 속한 시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최대값은 11.77이고(전북 전주시) 최소값은 -0.56로(경기 수원시) 나타남
 - 시-나에 속한 시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0과 +1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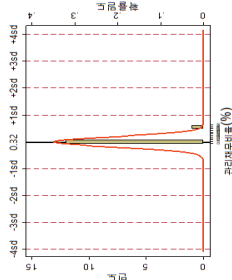
- 사이로 0에서 10.33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시가 해당되는데 전체 21개 시 가운데 57.14%인 12개 시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0과 +1SD 사이 이외에 +1SD에서 +3SD 사이에 6개 시가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시들이 0에서 +3SD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나에 속한 시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최대값은 31.17이고(전남 여수시) 최소값은 -10.97로(경기 시흥시) 나타남
 - 시-다에 속한 시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0과 +1SD 사이로 0에서 9.74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시가 해당되는데 전체 19개 시 가운데 47.37%인 9개 시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0과 +1SD 사이 다음으로 +1SD와 +2SD 사이에 8개 시가 포함되어 있어 0에서 +2SD 사이에 대부분의 시가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다에 속한 시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최대값은 39.74이고(경기 과천시) 최소값은 -3.25로(경북 김천시) 나타남
 - 시-라에 속한 시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0과 +1SD 사이로 0에서 5.61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시가 해당되는데 전체 20개 시 가운데 35.00%인 7개 시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0과 +1SD 사이 다음으로 +1SD와 +2SD 사이, 그리고 +2SD와 +3SD 사이에 각각 5개 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3개 시는 +3SD와 +4SD 사이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라에 속한 시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최대값은 20.67이고(충남 계룡시) 최소값은 0.26로(경북 문경시) 나타남
 - 군-가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가장 많은 군이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0과 +1SD 사이로 0에서 7.11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군이 해당되는데 전체 21개 군 가운데 52.38%인 11개 군이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0과 +1SD 사이 다음으로 -1SD와 0, 그리고 +1SD와 +2SD 사이에 각각 4개 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2SD와 +4SD 사이에 나머지 2개 군이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군-가에 속한 군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최대값은 25.76이고(경기 연

- 천군) 최소값은 -6.29로(경북 울진군) 나타남
- 군-나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가장 많은 군이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1SD와 +2SD 사이로 6.01에서 12.01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군이 해당되는데 전체 20개 군 가운데 45.00%인 9개 군이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1SD와 +2SD와 사이 다음으로 0과 +1SD 사이에 5개 군이, -1SD와 0 사이에 3개 군 등이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군-나에 속한 군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최대값은 14.47이고(경남 거창군) 최소값은 -8.79로(경남 하동군) 나타남
 - 군-다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가장 많은 군이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1SD와 +2SD 사이로 4.47에서 8.93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군이 해당되는데 전체 20개 군 가운데 45.00%인 9개 군이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1SD와 +2SD와 사이 다음으로 0과 +1SD, 그리고 +2SD와 +3SD 사이에 각각 4개 군 등이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군-다에 속한 군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최대값은 15.82이고(강원 인제군) 최소값은 -2.12로(경북 고령군) 나타남
 - 군-라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가장 많은 군이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0과 +1SD 사이로 0에서 6.50 사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가지는 군이 해당되는데 전체 21개 군 가운데 47.62%인 10개 군이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0과 +1SD와 사이 다음으로 +1SD와 +2SD에 7개 군이 포함되어 있어, 0에서 +2SD 사이에 대부분의 군이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군-라에 속한 군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최대값은 28.92이고(경북 영덕군) 최소값은 -2.17로(경북 군위군) 나타남
 - [참고: 표 3]에 포함된 그림 (가)~(파)는 [참고: 표 3]의 각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결과를 히스토그램과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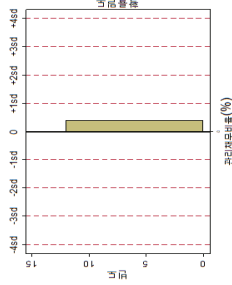
[참고: 표 4] 재정분석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관리채무비율 분포-2019년(FY2018)

구간 별 SD	빈도 (퍼센트)	-4SD 이하	-3SD 초과 -3SD 이하	-2SD 초과 -1SD 이하	-1SD 초과 평균 이하	평균 초과 +1SD 이하	+1SD 초과 +2SD 이하	+2SD 초과 +3SD 이하	+3SD 초과 +4SD 이하	+4SD 초과	총 단체 수	최대값	최소값
		-23.46 (0.00%)	-17.51 -11.57 -5.63 (0.00%)	-11.57 -5.63 0 (0.00%)	-5.63 0.31 12 (92.31%)	0.31 6.26 7.69%	6.26 12.20 0 (0.00%)	12.20 18.15 0 (0.00%)	18.15 24.09 0 (0.00%)	24.09 24.09 0 (0.00%)			
서울-가	빈도 (퍼센트)	0 (0.00%)	-23.46 -17.51 -11.57 -5.63 (0.00%)	-11.57 -5.63 0 (0.00%)	-5.63 0.31 12 (92.31%)	0.31 6.26 7.69%	6.26 12.20 0 (0.00%)	12.20 18.15 0 (0.00%)	18.15 24.09 0 (0.00%)	24.09 24.09 0 (0.00%)	13 (100.00%)	4.11%	0.00%
서울-나	빈도 (퍼센트)	0 (0.00%)	-9.64 -7.23 -4.82 -2.41 0 (0.00%)	-4.82 -2.41 0 (0.00%)	-2.41 0 2.41 (100.00%)	0 2.41 2.41	2.41 4.82 0 (0.00%)	4.82 7.23 0 (0.00%)	7.23 9.64 0 (0.00%)	9.64 9.64 0 (0.00%)	12 (100.00%)	0.00%	0.00%
광역-가	빈도 (퍼센트)	0 (0.00%)	-17.59 -13.04 -8.48 -3.93 0 (0.00%)	-8.48 -3.93 0 (0.00%)	-3.93 0.63 15 (68.18%)	0.63 5.18 7 (31.82%)	5.18 9.74 0 (0.00%)	9.74 14.29 0 (0.00%)	14.29 18.85 0 (0.00%)	18.85 18.85 0 (0.00%)	22 (100.00%)	2.85%	0.00%
광역-나	빈도 (퍼센트)	0 (0.00%)	-19.35 -14.46 -9.57 -4.68 0 (0.00%)	-9.57 -4.68 0 (0.00%)	-4.68 0.20 15 (68.18%)	0.20 5.09 7 (31.82%)	5.09 9.98 0 (0.00%)	9.98 14.87 0 (0.00%)	14.87 19.76 0 (0.00%)	19.76 19.76 0 (0.00%)	22 (100.00%)	1.99%	0.00%
시-가	빈도 (퍼센트)	0 (0.00%)	-13.21 -9.09 -4.97 -0.85 0 (0.00%)	-9.09 -4.97 0 (0.00%)	-4.97 3.27 9 (60.00%)	3.27 7.39 3 (20.00%)	7.39 11.51 0 (0.00%)	11.51 15.62 0 (0.00%)	15.62 19.74 0 (0.00%)	19.74 19.74 0 (0.00%)	15 (100.00%)	10.79%	0.00%
시-나	빈도 (퍼센트)	0 (0.00%)	-38.49 -28.16 -17.83 -7.50 0 (0.00%)	-17.83 -7.50 2.83 (61.90%)	-7.50 2.83 13 (61.90%)	2.83 13.16 8 (38.10%)	13.16 23.49 0 (0.00%)	23.49 33.82 0 (0.00%)	33.82 44.14 0 (0.00%)	44.14 44.14 0 (0.00%)	21 (100.00%)	12.57%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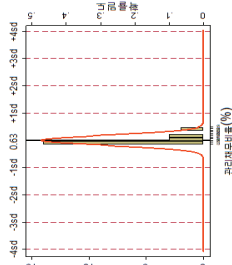
		-4SD 이하	-4SD 초과 -3SD 이하	-3SD 초과 -2SD 이하	-2SD 초과 -1SD 이하	-1SD 초과 평균 이하	평균 초과 +1SD 이하	+1SD 초과 +2SD 이하	+2SD 초과 +3SD 이하	+3SD 초과 +4SD 이하	+4SD 초과	총 단체 수	최대값	최소값
시-다	구간 별 SD	-36.22	-36.22	-26.48	-16.73	-6.99	2.76	12.50	22.24	31.99	41.73	19 (100.00 %)	9.32%	0.00%
	빈도 (퍼센트)	0 (0.00%)	0 (0.00%)	0 (0.00%)	0 (0.00%)	12 (63.16%)	7 (36.84%)	0 (0.00%)	0 (0.00%)	0 (0.00%)	0 (0.00%)			
시-라	구간 별 SD	-19.92	-19.92	-14.31	-8.69	-3.08	2.53	8.14	13.76	19.37	24.98	20 (100.00 %)	10.7%	0.00%
	빈도 (퍼센트)	0 (0.00%)	0 (0.00%)	0 (0.00%)	0 (0.00%)	13 (65.00%)	6 (30.00%)	1 (5.00%)	0 (0.00%)	0 (0.00%)	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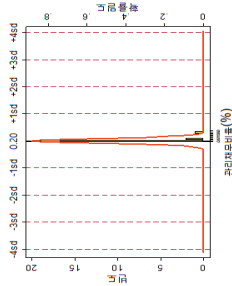
(가) 서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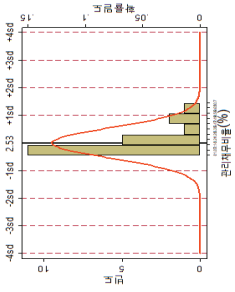
(나) 서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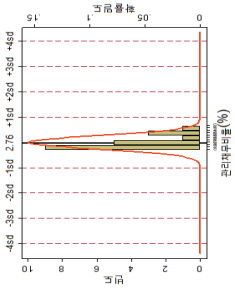
(다) 광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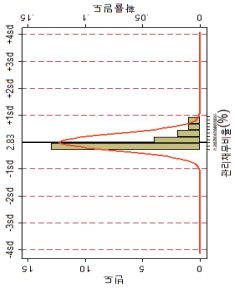
(라) 광역-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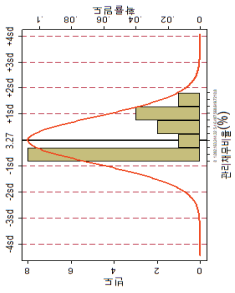
(아) 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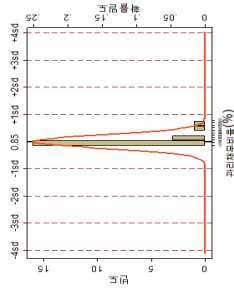
(사) 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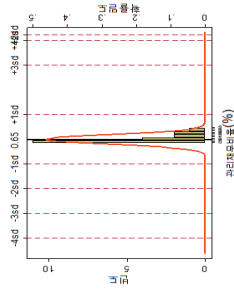
(바) 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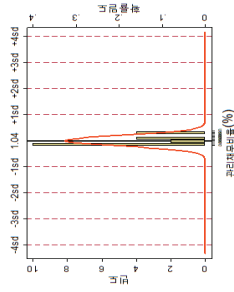
(마) 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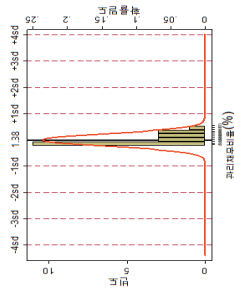
(피) 군-라



(카) 군-다



(차) 군-나



(자) 군-가

- [참고: 표 4]는 2019년(회계년도 2018)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관리채무비율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먼저 서울-가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가장 많은 자치구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1SD와 평균 사이로 -5.63에서 0.31 사이의 관리채무비율을 가지는 자치구가 해당되는데 전체 13개 자치구 가운데 92.31%인 9개 자치구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1SD와 평균 사이 다음으로 평균과 +1SD 사이에 나머지 1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가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관리채무비율의 최대값은 4.11이고(서울 강남구) 최소값은 0.00으로(서울 강동구 등 12개 단체) 나타남
 - 서울-나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전체 12개 자치구가 -1SD와 평균 사이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나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모든 자치구의 관리채무비율이 0.00(서울 강북구 등 12개 단체)으로 나타남
 - 광역-가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가장 많은 자치구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1SD와 평균 사이로 -3.93에서 0.63 사이의 관리채무비율을 가지는 자치구가 해당되는데 전체 22개 자치구 가운데 98.18%인 15개 자치구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0과 +1SD 사이 다음으로 평균과 +1SD 사이에 나머지 7개 자치구가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가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관리채무비율의 최대값은 2.85이고(인천 중구) 최소값은 0.00으로(대구 수성구 외 9개 단체) 나타남
 - 광역-나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도 광역-가에 속한 자치구와 동일하게 전체 22개 자치구 중 -1SD와 평균 사이에 15 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7개 단체는 평균과 +1SD 사이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나에 속한 자치구의 경우 관리채무비율의 최대값은 1.99이고(대전 동구) 최소값은 0.00로(대구 남구 등 15개 단체) 나타남
 - 시-가에 속한 시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1SD와 평

- 군 사이로 -0.85에서 3.27 사이의 관리채무비율을 가지는 시가 해당되는데 전체 15개 자치구 가운데 60.00%인 9개 시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1SD와 평균 사이 다음으로 평균과 +1SD, 그리고 +1SD와 +2SD 사이에 각각 3개 시가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가에 속한 시의 경우 관리채무비율의 최대값은 10.79이고(경남 김해시) 최소값은 0.00로(경기 고양시 등 3개 단체) 나타남
 - 시-나에 속한 시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1SD와 평균 사이로 -7.50에서 2.83 사이의 관리채무비율을 가지는 시가 해당되는데 전체 21개 시 가운데 61.90%인 13개 시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1SD와 평균 사이 다음으로 평균에서 +1SD 사이에 나머지 8개 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나에 속한 시의 경우 관리채무비율의 최대값은 9.32이고(경북 구미시) 최소값은 0.00로(경기 광명시 등 6개 단체) 나타남
 - 시-다에 속한 시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1SD와 평균 사이로 -6.99에서 2.76 사이의 관리채무비율을 가지는 시가 해당되는데 전체 19개 시 가운데 63.16%인 13개 시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1SD와 평균 사이 다음으로 평균과 +1SD 사이에 나머지 8개 시가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다에 속한 시의 경우 관리채무비율의 최대값은 9.32이고(전북 익산시) 최소값은 0.00로(경기 과천시 등 2개 단체) 나타남
 - 시-라에 속한 시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1SD와 평균 사이로 -3.08에서 2.53 사이의 관리채무비율을 가지는 시가 해당되는데 전체 20개 시 가운데 65.00%인 13개 시가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 -1SD와 평균 사이 다음으로 평균과 +1SD 사이에 6개 시가, 그리고 +1SD와 +2SD 사이에 나머지 1개 시가 각각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라에 속한 시의 경우 관리채무비율의 최대값은 10.70이고(충남 계룡시) 최소값은 0.00로(강원 삼척시 등 6개 단체) 나타남
 - 군-가~군-라에 속한 군의 경우 가장 모든 군이 포함되고 있는 범위는 -

- 1SD와 평균 사이로 군-가는 전체 21개 군 중 13개 군이, 군-나는 전체 20개 군 중 10개 군이, 군-다는 전체 20개 군 중 11개 군이, 그리고 군-라는 전체 21개 군 중 15개 군이 각각 이 범위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 -1SD와 평균 사이 다음으로 평균과 +1SD 사이에 나머지 군들이 속해있어 -1SD와 +1SD 사이에 모든 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군-가에 속한 군의 경우 관리채무비율의 최대값은 5.29이고(경북 칠곡군) 최소값은 0.00로(경기 양평군 등 8개 단체) 나타남
 - 군-나에 속한 군의 경우 관리채무비율의 최대값은 3.27이고(충남 금산군) 최소값은 0.00로(강원 철원군 등 7개 단체) 나타남
 - 군-다에 속한 군의 경우 관리채무비율의 최대값은 2.77이고(충북 보은군) 최소값은 0.00로(강원 양구군 등 10개 단체) 나타남
 - 군-라에 속한 군의 경우 관리채무비율의 최대값은 5.85이고(전남 강진군) 최소값은 0.00로(강원 고성군 등 10개 단체) 나타남
- [참고: 표 4]에 포함된 그림 (가)~(파)는 [참고: 표 4]의 각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결과를 히스토그램과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음

지방재정분석 시스템(e호조) 자료 입력 방법

1. 재정분석시스템의 기초 자료는 예산·재무결산의 자료를 활용하여 화면에 나타나게 되며, 결산서 책자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자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e호조의 자료를 변경한 후 반드시 결산서 책자와 일치
2.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자동으로 산정되는 초기 자료에 대해서는 화면에 값을 보여주고, 자료 수정은 불가능함
3. e호조로 산정이 불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직접 입력하고 별도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탄력세율 적용액, 국도서비스업비, 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 소방직 인건비 결산액 등

□ 재정분석 지표

1. 지체수입비율(증감률)[일반회계]

1-1.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총괄의 목별조서

- 실제수납액 : 보통세(111), 목적세(112)
 - ※ 지방교육세(112-02) 제외
 - ※ 과년도분(지나년도수입) 제외(113)
 - ※ FY2018 ~ FY2019(2년간)
 - ※ 3년 평균값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년도 실제납액을 기준으로 산정

◆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지방세 수입액(A) (실제수납액)				세입결산액 (B)	지표값 (A/B) × 100
	계 (A=d)	지방세총액 (110) (a)	지나년도수입 (113) (b)	지방세(100) 지방교육세 (112-02) (c) 반영액 d=(a-b-c)		
연 도						
2019년도		①	②	③		
2018년도		①	②	③		

가. 목 별 조 서(2019)

(단위: 원)

과 목 구 분	장 관 항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⑦	수 납 과 과 반 환 액④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액⑤	실제수납액 (⑦ - ④)		
	합 계								①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2 목적세											
112-02 지방교육세									③		
113 지난해도수입									②		
200 세외수입											
210 경상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나. 목 별 조 서(2018)

(단위: 원)

과 목 구 분	장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원액	징수 결정액	수납총액 ㉑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과 오 반 환 액 ㉒	남 실제수납액 (㉑ - ㉒)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액
합 계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①			
112 목적세											
112-02 지방교육세									③		
113 지난년도수입										②	
200 세외수입											
210 경상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1-2. 세외수입비율(증감률)

◆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총괄의 목별조서

- 실제수납액 : 경상적 세외수입(210), 임시적 세외수입(220)
- ※ FY2018 ~ FY2019(2년간)
- ※ 3년 평균값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년도 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산정

◆ 세외수입비율(증감률)

(단위: 원)

구 분	세외수입액(A) (실제수납액)			세입결산액 (B)	지표값 (A/B) × 100
	계 (A=d+e)	세외수입 (200)			
		경상적 세외수입 (210) (d)	임시적 세외수입 (220) (e)		
연 도					
2019년도		①	②		
2018년도		①	②		

가. 목 별 조 서(2019)

(단위: 원)

과목구분 장 관 항 목	예산액	전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종액 ㉑	납액		미납액
						과 과 반 환 액 ^㉒	실제수납액 (㉑ - ㉒)	
합 계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2 목적세								
112-02 지방교육세								
113 지만년도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세외수입							①	
220 임시적세외수입							②	

나. 목 별 조 서(2018)

(단위: 원)

과 목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처리	
					수납총액 ㉑	과 오 반 환 액 ㉒	납 실계수납액 ㉓ - ㉔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 월 액
합 계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2 목적세									
112-02 지방교육세									
113 지만년도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세외수입							①		
220 임시적세외수입							②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일반회계]

◆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특별조서

- 실제수납액 반영액 = 지방세 실제수납액(100) - {과년도 실제수납액(113) +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111-08)}
 - 징수결정액 반영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100) - {과년도 징수결정액(113) +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111-08)}
- ※ FY2018 ~ FY2019(2년간)

[일반회계]

(단위: 원)

계 A= (a/b)*100	2019년 지방세 징수율(A)							2018년 지방세 징수율(B)							지 표 값 A/B	
	실제수납 반영액 소계 a = ① - (②+③)	실제 수납액 ①	과 년 도 수 입 ②	지 방 소 비 세 ③	징수 결정액 소계 b = ④ - (⑤+⑥)	징수 결정액 ④	과 년 도 수 입 ⑤	지 방 소 비 세 ⑥	실제 수납액 반영액 소계 a = ① - (②+③)	실제 수납액 ①	과 년 도 수 입 ②	지 방 소 비 세 ③	징수 결정액 소계 b = ④ - (⑤+⑥)	징수 결정액 ④		과 년 도 수 입 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 체납액 관리 비율(증감률)[일반회계]

3-1.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증감률)

◆ 결산서 세입세출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별조서

○ 2019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2019년 말 지방세 미수납액*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자동차세 주행분 미수납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정

○ 2018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2018년 말 지방세 미납액**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자동차세 주행분 미수납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정

※ 체납액관리 관점에서 각 연도말 미수납액을 기준으로 산정(불납결손 및 결손처분을 제외하지 아니함)

※ FY2018 ~ FY2019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일반회계]

2019년	지방세 미수납액 (A=a-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입결산액 (B)	지표값(%) (A/B)×100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①	②	③	④		
2018년	지방세 미수납액 (A=a-b)		결손처분액	다음연도이월액	세입결산액 (B)	지표값(%) (A/B)×100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⑤	⑥	⑦	⑧		

(단위: 원)

3-2.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증감률)

◆ 결산서 세입결산총괄의 목별조서

- 2019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2019년 말 세외수입 미수납액*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남기미도래미징수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정
- 2018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2018년 말 세외수입 미납액**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남기미도래미징수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정
※ 체납액관리 관점에서 각 연도말 미수납액을 기준으로 산정(불납결손 및 결손처분을 제외하지 아니함)
※ FY2018 ~ FY2019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일반회계] (단위: 원)

연도	세외수입 미수납액 (A=a-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입결산액 (B)	지표값(%) (A/B) × 100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2019년	①	②	③	④		
2018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A=a-b)		결손처분액	다음연도이월액	세입결산액 (B)	지표값(%) (A/B) × 100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⑤	⑥	⑦	⑧		

○ 목 별 조 서(2019년 결산)

(단위: 원)

과목구분 장관항목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원액	징수결정액	수입액			부담결산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㉑)	과오반환액 (㉒)	실제수납액 (㉓ - ㉒)		
200 세외수입				①			②	③	④
210 경상세외수입									
220 임시세외수입									

○ 목 별 조 서(2018년 결산)

(단위: 원)

과목구분 장관항목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원액	징수결정액	수입액			미수납액처리	
					수납총액 (㉑)	과오반환액 (㉒)	실제수납액 (㉓ - ㉒)	결산처분	다음연도이월액
200 세외수입				⑤			⑥	⑦	⑧
210 경상세외수입									
220 임시세외수입									

4. 지방보조금비용(증감률)[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 결산서 첨부서류 (8)기능별 · 성질별 결산현황
 - 세출결산액: 연도별결산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결산총액(지출액)
 - 지방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 FY2018~FY2019(2년간)

지방보조금비용 (FY2018 ~ FY2019)

(단위: 원)

연도	구분	지방보조금(a)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a/b) × 100	
		회계별	계(a)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비 보조)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019년도	계													
	일반회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기타특별회계													
2018년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2) 세출결산총괄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㉑	예산 성립 후 증감액 ㉒	예산현액 (㉑+㉒)	지출원인 행위액 ㉓	지출액 ㉔	다음년도 이월액 ㉕				집행 잔액 (㉕-㉖-㉗)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일반회계					⑦						
	기타특별회계					⑧						
	공기업특별회계											

5. 출지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통합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 세출결산액: 연도별 결산서 통합회계 결산총액(지출액)
- 출연·출자·전출금: 출연금(306), 출자금(502), 전출금(309),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701-02),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701-03)
 - ※ 전출금(309)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309-03)은 제외
 - ※ 출연금(306) 중 법정출연금 부분은 평가 시 제외하여 반영(직접입력; 2017회계연도 분은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입력)

FY2019~FY2018(2년간)

출자출연전출금비율 (FY2018 ~ FY2019)

[통합회계]

구분 연도	계 (A)	출자·출연·전출금(a)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 × 100
		306 (출연금)	502 (출자금)	309 (전출금)	404 (공사공단자 본전출금)	701-02 (공기업 경상전출금)	701-03 (공기업 자본전출금)		
2019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								
	기금								
2018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								
	기금								

(단위: 원)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일반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 세입·세출결산액 : 연도별(FY2018~FY2019) 결산서 일반회계 결산총액(지출액)

구분 회계 연도		자체수입 (지방세+ 지방세외 수입) (A)	자체경비 (B)						2019년도 자체경비비율 (%) $C=(B/A) \times 100$
			일반운영비 (201-01~04, 공립대학운영비 제외(05)) (a)	여비 (202) (b)	업무추진비 (203-01,03) (c)	의회비 (205-04,05,06) (d)	재료비 (206) (e)	소계 $B=(a+b+c+d+e)$	
2019년도		①						②	

(단위: 백만원)

[FY2018]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구분	자체수입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D)	자체경비(E)						2018년도 자체경비비율 (%) F=(E/D) ×100
			일반운영비 (201-01~04, 공립대학운영비 제외(05)) (a)	여비 (202) (b)	업무추진비 (203-01,03) (c)	의회비 (205-04,05,06) (d)	재료비 (206) (e)	소계 E=(a+b+c +d+e)	
	소계	③						④	
	일반공행정								
	임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7. 증기재정계획반영비율[일반회계+공기업+기타특별회계]

※ FY2019(단년도)

구 분 연 도	당초사업예산액(A)				증기지방재정 계획상의사업비(B)	지표값(% (A/B)×100
	계 (A=(가+나)-다)	보조사업 (가)	자체사업 (나)	천재, 재해 (다)		
2019년도		①	②		③	

(단위: 백만원)

- 당초사업예산액(A): 당해 회계년도 당초예산의 사업예산총액과 일치함
- 증기지방재정계획사업(B): 당해 회계년도 전년도 상반기에 수립·확정한 증기 지방재정계획의 사업예산총액
 -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증기지방계획에 반영없이 긴급시설 복구비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비를 증기지방재정계획사업비(B)에서 제외하여(단, 집행 명세서를 첨부) 증기재정 계획반영비율 산정을

최종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1. 일반·특별회계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
	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세	경 상 예 산 인 건 비 경 상 적 경 비 사 업 예 산 보 조 사 업 자 체 사 업 채 무 상 환 지 방 채 상 환 채 무 담 행 위 상 환 예 비 비 등 예 비 비 기 타 인 건 비 물 건 비 이 전 경 비 자 본 지 출 융 자 및 출 자 보 전 재 원 내 부 거 래 예 비 비 및 기 타					
		세				
		세				
		향				
		별				
		별				
		별				
		별				
		별				
		별				
		별				
		별				
		별				
		별				
출	인 건 비 물 건 비 이 전 경 비 자 본 지 출 융 자 및 출 자 보 전 재 원 내 부 거 래 예 비 비 및 기 타					
		출				
		출				
		출				
		출				
		출				
		출				
		출				
		출				
		출				
		출				
		출				
		출				
		출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출전망 총괄(일반회계+기타공기업특별회계)

(단위: 억원, %)

구분	'18~'22	중기 계획 기간					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경상예산							
사업예산 (or 투자수요)			③				
채무상환							
예비비등							

※ 2018년 상반기 작성·제출한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상 세출전망 총괄의 사업예산
(or 투자수요)

8. 세수오차비율[일반회계]

※ FY2019(단년도)

○ 행정안전부 결산자료 및 이호조 자료를 활용하여 일괄입력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		2019년도 당초예산액(A)		2019년도 최종예산액(B)		2019년도 세입결산액(C)		세수오차비율(%)= {(A/C)X50%+(B/C)X50%}
		구분	소계 (A)	소계 (B)	일반회계	중영입력		
연도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중영입력			

9. 이불용액율[일반회계+기타·공기업특별회계]

※ FY2019(단년도)

○ 행정안전부 결산자료 및 이호조 자료를 활용하여 일괄입력

구분	회계구분	집행잔액(A)				다음연도 이월액(B=k)		보조금 반납금	예산현액 (C)	지표값 (%) $\{(A+B)/C\} \times 100(\%)$
		소계 (A=a+b+c)	정책사업 (a)	행정운영 경비 (b)	재무활동 (c)	사고이월 (k)				
2019년도	계									
	일반회계		중양입력	중양입력			중양입력			
	기타특별회계		중양입력	중양입력			중양입력			
	공기업특별회계		중양입력	중양입력			중양입력			

(단위: 원)

10. 통합재정수지 비율[통합회계]

○ e호조에 의해 산출(통합재정수지 자료는 행정안전부 합동작성 후 자료 취합하여 일괄입력)

(단위: 원)

연도별	회계	수입 (A)	수입+ 순세계잉여금 (D)	지출 및 순용자(B)			통합재정 규모 (C)	순세 계잉여금 (d)	통합재정 수지비율 (%) $(A-B)/C$ $\times 100$	통합재정 수지비율 (순세계잉여금포함) (%) $(D-B)/C \times 100$
				소계 (B=a+b)	지출액 (a)	순용자 (b)				
2019년도	계	A		B			C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통합회계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특별회계, 기금특별회계를 의미 (이하 동일)

11. 관리채무비율[통합회계]

◆ 결산서 채무결산 보고서, 세입결산 총괄

- 결산서상의 채무결산 보고서중 회계별 당해 연도말 현재액(BTL지급잔액 포함)
-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액
- 행정안전부 지방채 합동작성 자료를 활용하여 일괄입력

※ FY2019

[통합회계]

연도별	구분	2019년도 지방채무 잔액(A)					2019년도 세입결산액(B)	지표비율(%) (A/B)×100
		계 (A= a+b+c+d)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a	채무부담 행위 b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c	BTL 지급잔액 d		
2019년도	합 계							
	일반회계		1	2	3	4		
	기타특별회계		5	6	7	8		
	공기업특별회계		9	10	11	12		
	기금특별회계		13	14	15	16		

(단위: 원)

※ 지방채무잔액은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a+채무부담행위b+보증채무이행책임액c+BTL지급잔액d

2. 채무관리보고서

2-2. 회계별 종류별 현황

(단위: 원)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㉓-㉖)	발생액㉗	소멸액㉘		
일반 회계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①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② ()
	채무부담행위						③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④
기타특별 회계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⑤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⑥ ()
	채무부담행위						⑦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⑧

(단위: 원)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㉑-㉒)	발생액(㉑)	소멸액(㉒)		
공기업특별 회계	지방채무 (계)						
	지역개발채권						⑨
	기타 지방채증권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⑩ ()
	채무부담행위						⑪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⑫
기금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⑬
	차입금						⑭ ()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채무부담행위						⑮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⑯	

12. 통합유동부채비율[통합부채현황보고서]

◆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중 유동부채, 유동자산

- 유동부채: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 ※ 합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공회계+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 내부거래
- 행정안전부 통합부채 합동작업 자료를 활용하여 일괄입력

(단위: 원)

구 분	2019년 부채총액				2019년 자산총액				지표값(%) (A/B) × 100	
	유동부채 (A)	장기 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유동자산 (B)	투자자산	일반유형 자산	사회기반 시설	주민편의 시설		기타 비유동자산
	①			②						①/②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13. 공기업부채비율[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지방공기업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 결산액

- 부채총액: 재정상태표 상의 부채총액
- 자기자본: 재정상태표 상의 자기자본
- 합계: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행정안전부 공기업결산자료 및 이호조 자료를 활용하여 일괄입력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단위: 원)

구 분	2019년 부채총액(A)	2019년 자기자본(B)	지표값(%) (A/B)×100
합계	중앙입력력	중앙입력력	
지방직영기업	중앙입력력	중앙입력력	
지방공사	중앙입력력	중앙입력력	
지방공단	중앙입력력	중앙입력력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 클린아이(www.cleaneye.go.kr) 자료 확인 및 점검

□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통합회계]

◆ 결산서 채무결산 보고서, 세입결산 총괄

- 결산서상의 채무결산 보고서중 회계별 당해 연도말 현재액(BTL지급액 포함)
- 경상일반재원: 세입결산 총괄의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경상세의수입 +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분권+부동산교부세 포함)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행정안전부 지방채 합동작업 자료 활용하여 일괄입력

※ FY2019

[통합회계]

연도별 구분	2019년 지방채무 잔액(A)				BTL 지급액 (d)	2019년 경상일반재원 결산액(B)				지표값(%) (A/B) × 100	
	계 (A=㉑+ b)+㉒+ d)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a)	채무 부담 행위 b)	보증채무 이행 책임액 c)		계 (B=㉑+㉒+ ㉓+㉔+㉕)	지방세 외 수입 ㉑	지방 교부세 ㉒	조정 교부금 ㉓		재정 보전금 ㉔
2019 년도	합 계										
	일반회계	①	②	③	④						
	기타특별회계	⑤	⑥	⑦	⑧						
	공기업특별회계	⑨	⑩	⑪	⑫						
기금특별회계	⑬	⑭	⑮	⑯							

※ 지방채무잔액은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㉑+채무부담행위㉒+보증채무이행책임액㉓+BTL지급액㉔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㉓-㉖)	발생액(㉗)	소멸액(㉘)		
일반 회계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①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	② ()
	채무부담행위						③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④
기타특별 회계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⑤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	⑥ ()
	채무부담행위						⑦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⑧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㉓-㉖)	발생액(㉓)	소멸액(㉖)		
공기업특별 회계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⑨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⑩ ()
	채무부담행위						⑪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⑫
	보증채무부담행위						
기금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⑬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⑭ ()
	채무부담행위						⑮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⑯
	보증채무부담행위						

2. 관리채무상환비율[통합회계]

- 2019년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자치단체별 지방채무상환비율을 적용
- 행정안전부 지방채 합동작업 자료 활용하여 일괄입력

※ FY2019

(단위: 원)

계 (A=(1))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A)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B)					지표값(% (A/B)×100	
	미래4년				미래4년						
	순지방비(a=1+2+3) 채무조기상환액(1)	차환액(3)	국비지원상환액(3)	시도비지원상환액(c)	계 (B=e+f+g+h+i) (B=e+f+g+h+i)	지방세(e)	경상세외수입(f)	지방교부세(g)	자치구조정교부금(h)		시군조정교부금(i)
				※ 기초자치단체 해당							

- 채무상환액: 지방재원리금+채무부담행위상환액+보증채무이행책임액(중 상환액)
 - 채무상환액 중 조기상환액, 차환상환액, 국·도비상환액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 경상일반재원 결산액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조금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를 모두 포함
 - ※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통합결산시 적용되는 세입과목을 적용
- 미래4년 평균 채무상환액 및 미래4년 평균 일반재원 수입액 계산식
 - ① 평균 채무상환액: 미래 4년(’20~’23) 채무상환액 ÷ 4년
 - ※ 이자액은 미래 4년간 채무상환액에 합산
 - ②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미래 4년(’20~’23)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4년
 - ※ 미래 4년 일반재원 수입액은 과거 4년 중 마지막 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 일반재원 평균 증기율을 적용하여 산정

3. 장래세대부담비율[통합회계]

◆ 복식부기 결산서 중 재정상태표 결산액

- 유형고정자산: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 부채합계: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 합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공기업특별회계) - 내부거래

[통합회계]

(단위: 원)

구분	2019년 부채합계(A)			2019년 유형고정자산(B)			지표값(%) (A/B) × 100	
	계 A=a+b	유동부채 (a)	장기차입부채 (b)	기타 비유동부채	계 B=c+d+e	일반유형자산 (c)		주민편의시설 (d)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⑥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 기타비유동부채는 통계관리 목적상 자료 입력 요망

○ 재정상태표(2019)

과 목	2019년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자 산						
I.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채고자산						
II.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III. 일반유형자산						④
토지						
임목						
IV. 주민편의시설						⑤
주차장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V. 사회기반시설						⑥
도로						
상수도시설						
부 체						
I. 유동부채						①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II. 장기차입부채						②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III. 기타비유동부채						③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4. 의무지출비율(증감률)[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 세출결산액: 연도별결산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결산총액(지출액)
- 의무지출: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시도비사업비(지방비부담 포함), 의회비(205), 채무상환비(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재정보전금(308-04)(광역), 조정교부금(308-03)(광역), 상생발전기금(광역),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3. 사업구분별 결산액
- ※ 국·시도비 사업비: 보조금 집행 현황(결산서 첨부서류)
- ※ FY2018~FY2019(2년간)

□ 의무지출비율(증감률) ※ FY2018~FY2019

(단위: 원)

구분 연도	의무지출 결산액(a)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 (a/b) x 100
	계(a)	기본경비	인력운영 경비	국·시도비 사업비	의회비 (205)	차입금 원금상환 (601)	차입금 이자상환 (311)	자치구 조정 교부금 (308-03)	시군 조정 교부금 (308-04)	상생발전 기금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		
2019		①+②	③+④	국·시도비 사업비 직접인력 ⑤+⑥+⑦+⑧+ ⑨+⑩+⑪+⑫	⑪	⑮	⑭	⑬	⑫	직접인력	직접인력		
2018		①+②	③+④	국·시도비 사업비 직접인력 ⑤+⑥+⑦+⑧+ ⑨+⑩+⑪+⑫	⑪	⑮	⑭	⑬	⑫	직접인력	직접인력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결산서 부속서류)

(8)-3. 사업구분별 결산액

구분	합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합계				
정책사업				
소계				
행정운영경비		①		②
인력운영경비		③		④
소계				
재무활동				
보전지출				
내부거래				

보조금 집행 현황(결산서 부속서류)

(당해) 일반회계

과목	부처별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②			집행액④			이월액⑤			잔액잔액⑥=②-④-⑤			
			시도	시군	구비	시도	시군	구비	시도	시군	구비	시도	시군	구비	시도	시군	구비	
조직 분야	세부	통계목																
합계																		
		공공근로																
		사업합계																

(이월(명시)) 일반회계

과 목	부처별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②			집행액④			이월액⑤			집행잔액 ⑥=②-④-⑤			
		시도 국비	시군 구비	시도 비	시도 국비	시군 구비	시도 비	시도 국비	시군 구비	시도 비	시도 국비	시군 구비	시도 비	시도 국비	시군 구비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계	공공근로 사업합계																

(이월(사고)) 일반회계

과 목	부처별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②			집행액④			이월액⑤			집행잔액 ⑥=②-④-⑤			
		시도 국비	시군 구비	시도 비	시도 국비	시군 구비	시도 비	시도 국비	시군 구비	시도 비	시도 국비	시군 구비	시도 비	시도 국비	시군 구비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계	공공근로 사업합계																

(이월(계속비)) 일반회계

과 목	부처별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②			집행액④			이월액⑤			집행잔액 ⑥=②-④-⑤			
		시도 국비	시군 구비	시도 비	시도 국비	시군 구비	시도 비	시도 국비	시군 구비	시도 비	시도 국비	시군 구비	시도 비	시도 국비	시군 구비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계	공공근로 사업합계																

(당해) 기타특별회계

과 목	부처별 조직 분야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⑦			집행액④			이월액⑤			집행잔액 ⑧=②-④-⑤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통계목적		사업명																	
합계		공공근로 사업합계																	

(이월(명시)) 기타특별회계

과 목	부처별 조직 분야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⑦			집행액④			이월액⑤			집행잔액 ⑧=②-④-⑤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통계목적		사업명																	
합계		공공근로 사업합계																	

(이월(사고)) 기타특별회계

과 목	부처별 조직 분야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⑦			집행액④			이월액⑤			집행잔액 ⑧=②-④-⑤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통계목적		사업명																	
합계		공공근로 사업합계																	

(이월(계속비)) 기타특별회계

과 목	부처별 조직 분야	사업명 세부 통계목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①			집행액④			이월액⑤			집행잔액 ⑥=②-④-⑤		
			계	국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군구비
합계																	
		공공근로 사업합계															

-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결산서 부속서류)
- (8)-2.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일반, 기타특별회계)**

구분	200 물건비			300 경상이전			600 보전지원		
	205 의회비	205-01 의정 활동비	308 자치단 체등 이전	308-03 자치구 조정교 부금	308-04 시군 조정교 부금	311 차입금 이자상환 개별기금 이자상환	311-01 시도지역 개별기금 이자상환	계	601 차입금 원금
분야/부문별									
합 계	①			②	③	④		⑤	
일반공공행정									
일반민생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2) 세출결산총괄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㉗	예산성립후 증감액 ㉘	예산현액 (㉗+㉘)	지출원인 행위액 ㉙	지출액 ㉚	다음년도 이월액 ㉛			집행잔액 (㉚-㉛-㉜)
							계	명시	사고	
합	계									
	일반회계			①		④				
	공기업특별회계			②		⑤				
	기타특별회계			③		⑥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8)-3 사업구분별 결산액
 - ①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8)-3: 사업구분별 결산액
- ◆ 결산서 첨부서류의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 ② 자본지출(400) 결산액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04 제외
 - ③ 용자및출자(500) 결산액

※ FY2019(단년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구 분	투자지출액			정책사업비 결산액 (B)	지표값(% (A/B)×100
	소계(A)	자본지출 (400)	용자및출자 (500)		
연 도	②	②	③	①	
2019 년도	②+③-④	②	③	①	

(단위: 원)

(8)-3. 사업구분별 결산액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합 계				
정책사업	①			
행정운영 경비	소 계			
	기본경비			
	인력운영경비			
재무활동	소 계			
	보전지출			
	내부거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8)-1. 총괄

(단위: 원)

재원별	구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차액	예산현액	차액	예산현액	차액	예산현액	차액	예산현액	차액
	㉑	㉒-㉓	㉑	㉒-㉓	㉑	㉒-㉓	㉑	㉒-㉓	㉑	㉒-㉓
자 본 지 출		㉒								
401 시설비및부대비										
402 민간자본이전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㉔								
405 자산취득비										
406 기타자본이전										
407 국외자본이전										
응 자 및 출 자		㉓								
501 융자금										
502 출자금										
보 전 재 원										
601 차입금원금										
602 예치금										
내 부 기 래										
701 기타회계전출금										
702 기금전출금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04 예탁금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706 기타내부거래										
예 비 및 기 타										
801 예비비										
802 반환금기타										

6.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8)-3 사업구분별 결산액

- ①, ②, ③, ④는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8)-3사업구분별 결산액

□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 FY2018~FY2019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원)

구 분 연 도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지표값(% (A/B)×100
	계(A)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2019년도	②	③	④	①
2018년도				

(8)-3. 사업구분별 결산액

(단위: 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합 계		①		①
정책사업				
소 계		②		②
행정 운영 경비		③		③
인력운영경비		④		④
소 계				
재무 활동				
보전지출				
내부거래				

7. 자본시설지출비용(증감률)[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 1. 총괄
 - 시설비및부대비(401) 결산액
-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 3. 사업구분별 결산액
 - 정책사업비

자본시설지출비용(증감률) ※ FY2018~FY2019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시설비지출액(A)	정책사업비 결산액(B)	지표값(%) (A/B) × 100
2019년	① + ②	③ + ④	
2018년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8)-1. 총괄

(단위: 원)

재원별	구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㉔	결산액 ㉕	예산현액 ㉔	결산액 ㉕	예산현액 ㉔	결산액 ㉕	예산현액 ㉔	결산액 ㉕
	자 본 지 출								
	401 시설비및부대비			①				②	
	402 민간지본이전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4 공기기업자본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406 기타자본이전								
	407 국외자본이전								
	용 자 및 출 자								
	501 용자금								
	502 출자금								
	보 전 재 원								
	601 차입금원금								
	602 예치금								
	내 부 거 래								
	701 기타회계전출금								
	702 기금전출금								
	703 교유비특별회계전출금								
	704 예탁금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706 기타내부거래								
	예 비 비 및 기 타								
	801 예비비								
	802 반환금기타								

(8)-3. 사업구분별 결산액

(단위: 원)

구분	합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합계				
정책사업		③		④
행정운영경비	소계			
	기본경비			
	인력운영경비			
재무활동	소계			
	보전지출			
	내부거래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통합회계]

◆ 복식부기 결산서 중 성질별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결산액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 FY2018~FY2019

(단위: 원)

구분	자본시설유지비용(A)			유형고정자산(B)			지표값(%) (A/B) × 100
	계 A=(a+b+c)	수선유지비 (a)	연료비 (b)	전기요금 (c)	계 B=(d+e)	일반유형자산 (토지 및 건물 중 자산 제외)※ (d)	
2019년		①	②	③		④	⑤
2018년							

※ "유형자산 등에 포함된 토지의 내역"에 보면 토지 및 건물 중 자산 금액이 별도로 산출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차감

○ 성질별 재정운영표(2018년)

(단위: 원)

과 목	2018년도(전기)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I.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II. 운영비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①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①
연료비							②
*전기요금							③

※ 전기요금은 제세공과금액 중 e호조에서 자동 산출

○ 재정상태표(2018년)

(단위: 원)

과 목	2018년도(전기)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자 산						
I.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II.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III. 일반유형자산						④
토지						
임목						
IV. 주민편의시설						⑤
주차장						
주차장감각상각누계액						
V. 사회기반시설						
도로						
상수도시설						

○ 성질별 재정운영표(2019년)

(단위: 원)

과 목	2019년도(당기)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I.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II. 운영비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①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①
연료비							②
*전기요금							③

※ 전기요금은 제세공과금액 중 e호에서 자동 신출

○ 재정상태표(2019년)

(단위: 원)

과목	2019년도(당기)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특별회계	내부거래(△)	
자산						
I.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II.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III. 일반유형자산						④
토지						
임목						
IV. 주민편의시설						⑤
주차장						
주차장감각상각누계액						
V. 사회기반시설						
도로						
상수도시설						

9. 인건비 집행률【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 기준인건비 대상 7개 과목 :
 -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 ※ 보수(101-01)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기준인건비 기준액(B):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기준액 일괄입력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구 분	인건비 결산 반영액(A)		기준인건비 기준액(B)			지표값(%) (A/B)×100
	반영액 (A=a-b)	결산액 (a)	소방직 (b)	반영액 (B=c-d)	기준인건비 (c)	
연 도						
2019년도		①-②			중양인력	중양인력

(단위: 원)

10. 실질수지비율【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결산서 총괄설명서 4. (3)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

- ※ 일반재원결산액 중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 일반재원결산액 중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모두 포함

(단위: 원)

구분	회계구분	실질수지액(A)				일반재원 결산액 (B)	지표값(% (A/B) × 100
		계 (A=a-b-c-d)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금 (c)		
2019년	계		①	②	③+④+⑤	⑥	⑦ ~ ⑩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총괄

4.(3)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

(단위: 원)

구분	예산 현액 ㉑	결산					현년도 채무 상환	결산상 잉여금					
		세입㉒	세출㉓	차입 잔액㉔	㉕/㉖	㉗/㉘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	순세계 잉여금
									㉙	㉚	㉛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⑥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4)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결산서 부속서류)

재원별	구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결산액	차액	예산현액	결산액	차액	예산현액	결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차액
	계										
세	①지방세			⑦					⑦		
	②세외수입			⑧					⑧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③지방교부세			⑨					⑨		
	④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⑩					⑩		
	시군 조정교부금			⑪					⑪		
	⑥보조금										
	국고보조금										
사·도비보조금											
입	⑥지방채										
	국내차입금										
	국외차입금										
	⑦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계										
	①인건비										
	②물건비										
	③이전경비										
	④자본지출										
	⑤융자및출자										
⑥보전재원											
⑦내부거래											
⑧예비미기타											
세											
출											

※ 일반재원결산액 중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는 제외

11. 주민참여예산 지출 비율[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주민참여예산사업 백서

- ① 부류,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사업액)

◆ 세출결산서

- ② 세출결산서 세출결산액

(단위: 원)

구분	주민참여예산지출액	세출결산액	지표값(%) (①/②)×100
	①(직접입력)	②	
합계			

12. 탄력세율[일반회계]

- ◆ 지방세 세율관련 조례를 참조하여 작성
- 주민세 균등분 지방세 서울관련 조례를 참조하여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 매년 조사하는 양식의 총합으로 직접 입력할 것
-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일괄조사 대응 부서에 문의하여 작성
- 도, 자치구의 경우 입력하지 아니함(주민세 개인균등분 적용 없음)

※ FY2019

[일반회계]

(단위: 원)

탄력세율적용세목	2019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 (주민세 개인균등분)	2019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A)
탄력세율적용 총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13. 행사추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액

- 세출결산액: 결산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결산총액(지출액)
- 행사추제 경비: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 기존 산정에서 제외되던 기획재정부 인정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국제행사,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전국장애인체전, 행정안전부 승인 행사추제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

※ FY2018~FY2019(2년간)

행사추제경비 비율(비율증감률)

(단위: 원)

구 분	행사추제경비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 B) × 100
	연 도	소계 (A)	행사추제경비(목적)				
			201-03 행사운영비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07-04 민간행사보조		
2019 년도		①	②	③	④	⑤	
2018 년도		①	②	③	④	⑤	
2017 년도		①	②	③	④	⑤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2) 세출결산총괄

(단위: 원)

구분	예산액 ㉑	예산성립후 증감액 ㉒	예산현액 (㉑+㉒)	지출원인 행위액 ㉓	지출액 ㉔	다음년도 이월액 ㉕				집행잔액 (㉑-㉔-㉕)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계											
일반회계					⑤						
기타특별회계					⑤						
공기업특별회계											

14.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통합회계】

◆ 복식부기 결산서 중 재정상태표 결산액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부채총액: 유동부채 + 장기차입부채 + 기타비유동부채
- 환금자산: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확자금위탁대여금) + 기타투자자산
- * 일반미수금 및 장기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
- 합계: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금회계) - 내부거래

【통합회계】

(단위: 원)

구분	2019년 부채총액(A)			2019년 환금자산(B)				지표값(%) (A/B) × 100		
	계 A=a+b+c	유동부채 (a)	장기차입부채 (b)	기타 비유동부채 (c)	계 B=d+e+f+g	유동자산 (d)	장기금융상품 (e)		장기대여금 (f)	기타투자 자산(g)
합계		①	②	③		④-⑤+⑥	⑦	⑧-⑨	⑩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 재정상태표(2019)

과 목	2019년도				내부거래(△)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자 산						
I. 유동자산						④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유동자산						⑤
II.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⑦
장기대여금						⑧
기타투자자산						⑩
III. 일반유형자산						
토지						
임목						
IV. 주민면의시설						
주차장						
주차장감각상각누계액						
V. 사회기반시설						
도로						
부 체						
I. 유동부채						①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II. 장기차입부채						②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III. 기타비유동부채						③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7. 기타유동자산의 세부내역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선급금						
일반미수금						⑥
일반미수금대손충당금						
미수수의						
선급비용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기타						
계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5. 장단기대여금의 세부내역 > 5-1. 원금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민간 대여금						
단기민간용자금						
장기민간용자금						
소계						
자치단체간 대여금						
단기자치단체간용자금						
장기자치단체간용자금						
소계						
예탁금						
단기에탁금						
장기에탁금						
소계						
학자금위탁대여금						
계						⑨

15.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성질별 결산현황**

- 세출결산액 : 연도별결산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결산총액(지출액)
- 민간위탁금 :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결산서 부속서류) 중 민간위탁금(307-05)

※ FY2018~FY2019(2년간)

(단위: 원)

	2019년도 민간위탁금비율(A=a/b)		2018년도 민간위탁금비율(B=c/d)		지표감(%) {(A-B)/B} x100
	2019년 민간위탁금 (307-05) (a)	2019년 세출 결산액 (b)	2018년 민간위탁금 (307-05) (c)	2018년 세출 결산액 (d)	
합계	①	②	③	④	
일반 회계			일반 회계		
기타 특별			기타 특별		

(2) 세출결산총괄(2019)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㉑	예산성립후 증감액 ㉒	예산현액 ㉓ (㉑+㉒)	지출인 행위액 ㉔	지출액 ㉕ ㉖=가+나	다음년도 이월액 ㉗			집행잔액 (㉓-㉕-㉗)
						계	명시	사고	
합계									
일반회계					가				
기타특별회계					나				
공기업특별회계									

(2) 세출결산총괄(2018)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㉑	예산성립후 증감액 ㉒	예산현액 ㉓ (㉑+㉒)	지출인 행위액 ㉔	지출액 ㉕ ㉖=가+나	다음년도 이월액 ㉗			집행잔액 (㉓-㉕-㉗)
						계	명시	사고	
합계									
일반회계					다				
기타특별회계					라				
공기업특별회계									

16. 예산집행률[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 결산서 총괄설명서 4. (2)세출결산총괄

※ FY2019(단년도)

회 계 명	회계수	세출결산액(A)	예산현액(B)	비율(%) (A/B) × 100
총 계				
일반회계		④	①	
기타특별회계		⑤	②	
공기업특별회계		⑥	③	

17. 일자리 사업 지출 비율[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제출서식

구분	일자리지원 사업 지출액	세출결산액		지표값(%) (①/②)×100
		① (중임력)	②	
합계				

*일자리사업 지출액은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사업 금액으로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중 일자리창출지표(고용노동부 자료)를 활용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취합하여 일괄입력

18. 순세계잉여금비율[일반회계]

◆ 결산서 세입·세출 처리현황 내역

- 세입세출결산의 순세계잉여금 기준
- ※ FY2019(단년도)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차인잔액(C) (A-B)	현년도 채무상환(D)	다음연도 이월액						지표값(% (F/B)×100
					계 (E=C-D)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F)	
2019년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가. 결산상 세입 세출현황

(단위: 원)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차인잔액 (C) (A-B)	현연도 채무상환 (D)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F/B × 100
				계 E=C-D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F)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9. 연말지출비율[일반회계]

◆ 지출원인행위부 및 회계지출프로그램 내역, 세입세출결산서

- 자체사업(220)의 시설비(401) :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중 본청분
- 세출결산액 : 결산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 지출액

※ FY2019(단년도)

구 분		자체사업(220) 시설비(401)의 연말(11월~12월)지출원인행위액(A)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	401 -01	401 -02	401 -03	401 -04		
연 도			①	②	③	④	⑤	
2019년도								

(단위: 백만원)

①, ②, ③, ④는 회계부서의 증빙자료

나. 세출결산총괄

(단위: 원)

구분	예산액 ㉑	예산성립후 증감액 ㉒	예산현액 ㉓ (㉑+㉒)	지출원인 행위액 ㉔	지출액 ㉕	다음년도 이월액 ㉖			집행잔액 (㉓-㉕-㉖)
						계	명시	사고	
합계					㉕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자원및기타경비									
특별회계									
소계									
공기업									
○○○특별회계									
△△△특별회계									
소계									
기타									
○○○특별회계									
△△△특별회계									

※ ①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시범비, 예비비사용액, 예비비사용액, 전용·이용·이체사용액 등 증감액을 말한다.
 ②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금없는 이월액 포함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일반회계]

-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결산현황
 - ◆ 본예산 세출총괄표 성질별
 - 지방의회경비과목: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 지방의회경비 결산액(A): 이호조 결산자료에서 가져오기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B): 산정공식에 의해 산정※
- ※ 기준액의 산출은 2018년 예산편성운영기준 상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 산정방식을 준용

(단위: 원)

구분 연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A)				지방의회경비 기준액(B)								지표값(%) $100 - (A/B) \times 100$		
	소계 (A=a+b+c)	의원 국외여비 (a)	의정운영 공통경비 (b)	의원운영 업무추진비 (c)	2019년도 기준액 $B = \{(d+e+f)/3\} \times 1.05$ $+ \{(g+h+i)/3\} \times 1.297$ $+ \{(j+k+l)/3\} \times 1.176$	의원 국외여비 예산액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액		의원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액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19 년도		①	②	③	중입력력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기준액: 본예산(당초예산) 세출총괄표(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일반회계, 성질별)

(단위: 원)

구분	2017년 당초예산액 (a)	2018년 당초예산액 (b)	2019년 당초예산액 (c)
분야/부문별			
205 의회비			
205-01 의정활동비			
205-02 월정수당			
205-03 의원국내여비			
205-04 의원국외여비	④	⑤	⑥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⑦	⑧	⑨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⑩	⑪	⑫
205-07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205-08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205-09 의정협의체부담금			
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11 의원국민건강보험금			

21. 업무추진비절감률[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 세출결산액 : 연도별 결산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결산총액(지출액)
 - 업무추진비 과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업무추진비 결산액(A): 이호조 결산자료에서 가져오기
 - 업무추진비 기준액(B): 산정공식에 의해 산정 후 증감입력※
- ※ 기준액의 산출은 2019년 예산편성운영기준 상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액한도 산정방식을 준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방법

-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적용 총액한도 산정
 - 광역: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9년~'17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 0.0024(세종 0.0049)
 - 기초: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9년~'17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 0.0035
- ※ 단, 산정된 한도액은 당해 단체 최근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산정된 한도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
 - * 광역: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 + 0.014)
 - * 기초: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 + 0.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방법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① 기초기준액 = 전년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②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① 정책사업 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 최근3년간 정책사업결산 평균증감률이란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정책사업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예시) '17년 경우: 전전년도(15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13년도)

②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③ 보정계수: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에는 0.1 적용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의 10%만 인정)

※ 기타사항: 정책사업결산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정책사업: 사업예산서 상의 정책사업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원)

구 분	2019년 업무추진비 결산액(A)		2019년 업무추진비 기준액(B)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a)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b)	2019년 기준액 (B=c+g)	2017년 행정운영경비 예산액(d)	2016년 행정운영경비 예산액(e)	2015년 행정운영경비 예산액(f)
연 도	①	②	중양일력	③	④	⑤
2019년도						

* 보정계수: 광역=0.0024, 세종=0.0049, 기초0.0003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원)

<p>※ 행정운영경비를 기준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산정하였을 때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을 경우 다음 의 서식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c)를 산출</p>	<p>업무추진비 기준액(B)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c) = r \times (1+0.014; \text{광역}) * \text{기초는 } 0.003$ 2017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r)</p>
<p>중잉입력 ※ 행정운영경비를 기준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산정하였을 때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을 경우 다음의 서식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c)를 산출</p>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원)

<p>2018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 $(g) = h + \{(i \times n) \times 0.1\}$</p>							<p>지표값(%) $100 - ((A/B) \times 100)$</p>
<p>2017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기준액 (h)</p>	<p>정책사업비 결산 증감률 $(i) = [(j-k)/k] \times 100 + \{(k-l)/l\} \times 100 / 3$</p>			<p>정책사업예산 연동 수요 $(n) = \{(o+p+q)/3\} \times 0.3$</p>			
<p>2016년 정책 사업비 결산액 (j)</p>	<p>2015년 정책 사업비 결산액 (k)</p>	<p>2014년 정책 사업비 결산액 (l)</p>	<p>2013년 정책 사업비 결산액 (m)</p>	<p>2017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기준액 (o)</p>	<p>2016년 시책추진업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기준액 (p)</p>	<p>2015년 시책추진업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기준액 (q)</p>	
중잉입력	⑥+⑦	⑧+⑨	⑩+⑪	⑫+⑬	중잉입력	중잉입력	

기준액: 본예산(당초예산) 기준 행정운영경비

(단위: 원)

분야/부문별	구 분	2017년 당초예산액 (d)	2016년 당초예산액 (e)	2015년 당초예산액 (f)
행정운영경비		③	④	⑤

기준액: 결산서류 첨부서류 기능별·성질별 결산 (8)-3. 사업구분별 결산액

연 도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16	합 계		⑥		⑦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2015	합 계		⑧		⑨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2014	합 계		⑩		⑪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2013	합 계		⑫		⑬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22. 경상수지비율【통합회계】

◆ 복식부기 결산서 중 성질별 재정운영표 결산액

(단위: 원)

구분	경상비용(A)				경상수익(B)				지표값(%) (A/B) × 100
	계	인건비	운영비	자치구 조정교부금	계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지방교부세수익	
		①	②	③(광역)		⑥	⑦	⑧	
2019년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자치구 조정교부금수익	시군 조정교부금수익		
		④(광역)	⑤(광역)			⑨(기초)	⑩(기초)		

○ 부식부기 결산서 중 성질별 재경운영표
[경상비용]

(단위: 원)

과 목	2019년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I. 인건비							①
II. 운영비							②
III. 정부간이전비용							
시도비보조금							
자치구조정교부금							③
시·군조정교부금							④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국기에대한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⑤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경상수익]

(단위: 원)

과 목	2019년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Ⅴ. 자체조달수익						
지방채수익						⑥
경상채외수익						⑦
임시채외수익						
Ⅵ. 정부간이전수익						
지방교부채수익						⑧
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						⑨
시군구조정교부금수익						⑩

23. 총지본 대비 영업이익률【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지방공기업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결산액

- 영업이익: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
- 총자본: 재정상태표 상의 자기자본 + 부채
- 합계: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행정안전부 공기업결산자료 및 이호조 자료를 활용하여 일괄입력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단위: 원)

구 분	2019년 영업이익(A)	2019년 총자본(B)			지표값(%) (A/B) × 100
		소계 (B=a+b)	자기자본 (a)	부채 (b)	
합 계	중앙입력		중앙입력	중앙입력	
지방직영기업	중앙입력		중앙입력	중앙입력	
지 방 공 사	중앙입력		중앙입력	중앙입력	
지 방 공 단	중앙입력		중앙입력	중앙입력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 클리어(www.cleaneye.go.kr) 확인 및 점검